

謹賀新年

2021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뉴스

(통권 제5호)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목) ● KOTRA VIETNAM BUSINESS NEWS

1월

2021년

이달의 포커스 뉴스



2021 베트남 주요 경제 정책은?

- 무역 및 투자유치 내실화, 디지털 경제, 상위 중소득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기대

2P

<2020년 결산> 주요 베트남 법률·관세·세무 FAQ 18P

2021 베트남 주요 경제 정책 및 유망상품	2
2021 은행권 전망 및 변화하는 주요 법률	11
(최지웅 변호사, 김유호 변호사, 송현우 신한은행 전략기획부장)	
2020 주요 베트남 법률·관세·세무 FAQ	18
(박영수 변호사, 조성룡 회계사, 김태윤·박주희 관세사)	
베트남 해외시장뉴스 및 월간 뉴스 · 프로젝트 동향 ..	32
<노무> 의무보험료 및 개인소득세 납부	43
최지웅 변호사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빈푹성>	46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53
공지사항 및 사업안내	58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문의처



+84 24-3946-0511



joara@kotra.or.kr

< 저작권자 © KOTRA >



2021 베트남 주요 경제 정책은?

- 2019년 수준의 95% 회복 전망
- 1월 전당대회 개최 이후 향후 10년 사회경제개발전략 발표
- 무역 및 투자유치 내실화, 디지털 경제, 상위 중소득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기대

2021 경제전망 개관

2020년 12월 베트남의 구글 트렌드 키워드 검색어 1위는 '내일의 날씨'가 차지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종합 키워드 검색어 1위는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다. 성큼 추워진 내일 날씨가 더 궁금해질 만큼, 베트남인들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조금은 벗어나 일상생활에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수 1421명(12월 24일 기준), 3분기 경제성장률 2.12%, 수출규모 전년 동기 대비 5.4% 성장(2020년 11월 기준) 등 전 세계 경제가 멈춘 위기 속에서도 베트남은 단호한 방역 대책과 V자형 반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동력으로 우수한 경제 성적을 발표했다.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하반기 주요 경제 기관에서는 올해와 내년 베트남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발표했다. 대부분이 코로나 이전의 95%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들이다.

주요 경제기관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연도(전망)	2020년	2021년
베트남 정부	2.0~2.5	6.0~6.5
World Bank	2.8	6.8
IMF	2.4	6.5
ADB	2.3	6.1
Fitch Solutions	2.6	8.2

주: '20년 하반기 발표 기준

자료: 각 기관 발표보고서

2021년 주요 경제 정책 전망

그러나 현재 베트남은 관광·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부진이 고용 위축과 기업 운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경제는 3사분기 이후 부분적으로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다 최근 2차 팬데믹으로 인해 하방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낙후지역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베트남도 다낭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의 경우 7월 2차 지역사회 감염, 태풍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커 집중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기도 했다. 베트남이 무역과 투자 중심의 개방형 경제 구조임을 감안할 때, 향후 베트남 경제는 세계 경기 회복과 보조를 맞춰가되 타 국가보다는 한 보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관광·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이에 따른 내수 경기는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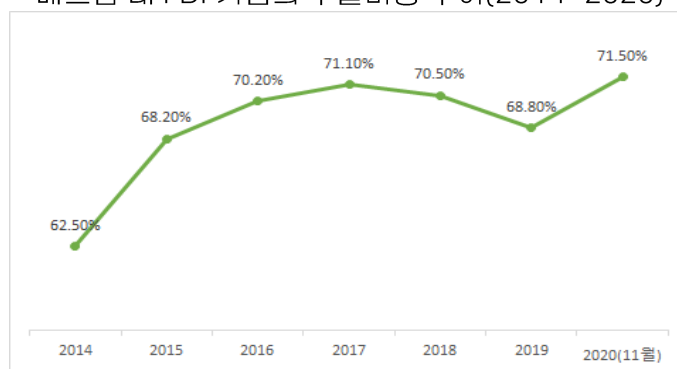
베트남은 오는 제13차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차기 10년에 대한 사회경제개발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되 코로나19로 변화한 환경이 반영된 몇 가지 장기 과제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경기 회복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될 것이나 아래와 같은 3가지 정책 방향을 예측해 보고 2021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베트남 경제를 가능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자 한다.

1. 무역과 투자, 베트남 경제의 두 기둥 내실화

얼어붙은 통상 환경 속에서도, 베트남은 EU-베트남 FTA 발효와 RCEP 서명이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했다. EVFTA 발효와 동시에 8월 베트남의 대EU 수출액은 1~7월 월평균 수출보다 6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지난 7년간 노력의 결실 'RCEP' 체결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 적시타로 평가받기도 했다. 다만, 현재 베트남은 FDI 기업의 수출 비중이 약 70%로 자국 기업에 의한 수출 비중은 여전히 적다. 따라서 향후 발표될 사회경제개발전략에는 로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포함될 것이며, 산업무역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자국 기업의 수출과 제품 경쟁력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베트남 무역진흥청은 각 산업별 조합, 지역 특산물 협회와 함께 소규모 생산자들의 수출 브랜딩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 또한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시작된 GVC 변화는 글로벌 기업의 베트남향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 분산 투자 수요 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올 한해 베트남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주요 요인이 됐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투자법 개정안, 민관합작투자법의 세부 시행령이 내년도에 발표되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에 따른 외자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베트남의 FDI 정책은 환경 개선을 통한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향후 10년 동안에는 이를 위한 첨단·친환경 기술 등 4차 산업 기술 적용 여부, 글로벌 공급망과의 연계성 정도 등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와 정책적 지원이 대대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베트남은 로컬산업에 하이테크 FDI 프로젝트가 접목된 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베트남 정부의 FDI 질적 개선을 위한 선별적인 투자 유치에 추세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내 FDI 기업의 수출비중 추이(2014~2020)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2. 디지털 경제 활성화

올 한해 비대면·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베트남은 이미 저렴한 운송비를 기반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상품 거래가 활성화돼 있는 시장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전 산업으로 비대면·온라인화가 확산했다. 특히 베트남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VNEDU는 올해 구글 검색어 2위를 차지하며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 6월 폭 총리는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비중을 높이고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경제생태계 구축에 대한 대대적인 비전을 선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빨라진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는 기존 베트남 산업의 디지털화 속도를 가속화 하고 2021년 산업 정책의 주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기업들의 낮은 과학기술 역량, 생산성 및 효율성 부문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한 5G 통신망 등 기반시설 구축,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현금·전자결제 등의 80% 이상 보급 등 범국민적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 온라인 중심의 정부 서비스 개편, 디지털 산업 특화 인재 육성 등 디지털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정보통신부 주관 'Make In Vietnam 2020' 포럼 개최



Make in Vietnam



Mới nhất

Cũ nhất

Sử dụng AI phát hiện người đánh nhau

Giải pháp AI Smart Warning thông qua camera giám sát có thể phát hiện và cảnh báo đánh nhau, say xỉn, ngã.



Hệ sinh thái giáo dục 4.0 của người Việt

Hệ sinh thái giáo dục thông minh vnEdu 4.0 sử dụng AI, Bigdata, Blockchain, VR/AR... giúp số hóa ngành giáo dục Việt Nam.



Người Việt dùng robot, AI giải 'bài toán' chuyển đổi số toàn cầu

Nền tảng tự động hóa akaBot dùng robot, AI giúp con người làm những công việc ít tạo ra giá trị mới, giải quyết bài toán chuyển đổi số cho doanh nghiệp.



Chiến lược giúp Be Group trở thành 'nền tảng số xuất sắc'

Theo bà Nguyễn Hoàng Phương, CEO Be Group, nền tảng mở để giải quyết các bài toán vận tải tại Việt Nam là hướng đi xuyên suốt của doanh nghiệp.



주: 베트남의 디지털 관련 정책 발표, 기술소개, 전시,시상 등 진행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Vnexpress

3. 상위 중소득국으로의 성장 동력 마련 및 코로나19 대응 지속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의 1인당 GNI는 2540달러로 분류 기준에 따라 하위 중소득국에 속한다. 2009년 1010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GNI는 제조업 FDI 주도의 경제성장으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 다음 단계인 상위 중소득국의 기준은 1인당 GNI 4046달러 이상으로, 해당 분류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또 한번의 경제 몸집 키우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현대식 산업과 중상위 소득 수준을 갖춘 개발도상국으로 성장하고 1인당 GDP 7500달러 수준의 목표를 발표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앞서 언급한 첨단 산업 육성, FDI 질적 개선 등이 주요하게 추진 될 것이며 베트남 경제 성장의 아킬레스건으로 언급되는 낮은 수준의 중앙 및 지방 행정 시스템 및 세무·회계 절차 투명성, 부패척결 등은 장기 해결 과제로 지속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당면한 코로나19발 단기 충격 극복을 위한 정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나 코로나19 긴급 재정정책을 통해 취약계층 및 피해산업을 지원했다. 또한 올 한해 역대 최고 금액의 공공투자로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한 경기 부양에 힘썼다. 이는 만성적 재정 적자를 겪는 베트남 정부의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켰으며 2020년 사회경제 개발계획의 재정적자 규모 목표치인 GDP의 3.44% 달성도 요원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아직까지 정부 부채 규모는 '합리적 수준'이며, 코로나19로 늘어난 정부 부채를 감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를 볼 때, 베트남 정부는 향후 10년의 지향점인 상위 중소득국 진입을 위한 동력 마련에 앞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책 지속할 것이며, 2021년에도 공공투자 등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노력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베트남은 2020년부 종료되는 5개년 사회경제개발 주요 목표 9개 중 6개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제약사 '나노젠'은 지난 17일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실험을 시작해 신속한 메이드 인 베트남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현지 경제학자 Le Dang Doanh은 올해 발효된 베트남-EU FTA 뿐만 아니라 RCEP, 베트남-영국 FTA 등이 베트남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자국 기업의 바이어 유치에 좋은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이와 변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팬데믹 속 베트남은 방역,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베트남만의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중이다. 2021년 베트남 정부의 또 다른 베트남식 정책이 기대된다.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베트남 통계청, World Bank, VNexpress,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끝>



2020년 베트남 시장이 주목한 6개 품목 및 2021년 유망품목

- '20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집콕족' 타겟 상품 판매 증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친환경, 건강을 키워드로 한 상품 유망

'20년 코로나19로 베트남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의 소비 패턴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실내외 활동을 결정하는 요소가 계절적 요인에 크게 영향 받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강제로 집안에서 제한적인 활동만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베트남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시행되었던 4월 이후 국제선 제한으로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국내에서의 일상생활은 비교적 자유로운 수준이 되었다.

올 한해 베트남 언론에서는 이러한 코로나19 이후의 소비 패턴을 반영한 다양한 분야의 유망 산업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냈다. 하노이 무역관에서는 그중 일부를 선정하여 2020년 주목 받았던 6가지 품목을 선정하고, 다가오는 2021년 관심을 기울여 볼 법한 유망 품목 7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2020년 베트남 시장이 주목한 6개 품목

1. 가공·포장식품

베트남에서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간 강력하게 시행되었다. 당시 공간들의 강력한 단속 하에 식료품점, 약국 등을 제외한 모든 상점과 음식점들은 임시 휴업을 단행했는데, 해당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의 가공·포장식품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낚스 베트남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가장 크게 유행하던 기간 동안 라면(67% 증가), 냉동식품(40% 증가), 살균 소시지(19% 증가) 등의 소비량이 급등하며 평소보다 더 많은 비상식량을 구비했다. 물론 '20년 10월 최신의 FMCG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반짝 성장했던 FMCG(일용소비재) 시장의 성장은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복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생활 정상화에 따라 구매량도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공·포장 식품 산업은 2020년 3분기 동안 전년대비 26%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최대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의 성과가 베트남 FMCG(일용소비재) 시장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2. OTT 서비스 & TV·빔프로젝터 등 영상기기

2020년 초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공장소 통제, 페스티벌·파티 개최 금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 기피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영상 콘텐츠 시청자가 크게 증가했다. 기존 모바일 기반 서비스에 더하여 가정에서의 스마트TV, 스크린, 빔 프로젝터를 통한 시청 수요도 늘어났다. 넷플릭스, 갤럭시 플레이, 애플 TV와 같은 OTT 플랫폼의 확산세도 높아졌다. Kantar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인은 첫 번째 코로나19 환자 발권 이전까지 하루 평균 231분 인터넷을 사용했지만 2월과 3월 사이 256분으로 11%가량 증가했다. 또한 Statista는 베트남의 OTT TV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8천 6백만 달러로 2024년까지 연 10.39%의 연평균 성장률로 연 1억 4100만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TT서비스는 올 한해의 성공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베트남 콘텐츠 시장의 가장 큰 수혜 업종으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3. 전자부품, 플라스틱 제품, 절연 전선 및 케이블

2020년에는 비대면 서비스 수요의 폭증으로 인해 영상기기,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 부품에 대한 베트남의 수요도 함께 증가했다. 베트남은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전자제품 생산 기지로서 2020년에 애플, LG전자 등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사에서도 추가적인 생산라인을 베트남에 구축하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11월 누적 기준 베트남의 컴퓨터·전자제품·관련 부품 수입량은 총 575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22.4%가 증가했다. 그 뒤를 이어 절연 전선 및 케이블은 18.3%, 플라스틱 제품은 10.3%, 전화기·휴대폰·관련 부품은 9%가 각각 증가했다. 해당 제품들은 베트남의 주요 수입품목 중 하나이지만, 11월 총 수입 증가량이 전년 대비 1.7%임을 감안할 때 해당 제품들의 수요는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4. 노트북, 태블릿 PC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해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PC와 관련 액세서리의 매출이 증가했다. 업계 주요 유통망 중 하나인 Mobile World사에 따르면 2020년 2월 기준, 노트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하여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또 하나의 수혜품목은 태블릿 PC를 들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에 입지를 빼앗겼던 태블릿PC는 콘텐츠 시청, 게임, 태블릿 드로잉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집콕족의 주요 취미생활이 되면서 베트남 소비자를 사로잡을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

5. 위생용품

위생용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특수를 가장 크게 누린 제품군이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2020년 초 개인위생 용품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다.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기간 동안 구강세정제가 78%, 바디워시는 45%, 티슈류도 35% 가량 판매량이 증가했다.

코로나 19 이전에도 베트남인들의 소득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대중들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손 씻기, 방역, 공공위생 등이 필수적인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위생에 대한 인식이 더욱 제고되고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측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손씻기와 세신 등은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권고 사항이 될 것이며 관련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도 전망된다.

6. 가정용 원예용품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정에서의 화분 가꾸기가 인기를 끌었다. 휴교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집에 장시간 머무르는 아이들을 위해 야외활동을 대체하는 작은 정원 가꾸기 등이 새로운 취미로 부상했다. 또한 베트남인들은 채소 섭취량이 많아 가정에서 간단한 채소류를 직접 기르기도 한다. 코로나 19 이후 테라스나 집 근처 땅을 이용해서 가족들이 먹을 소량의 채소를 수확하는 가정도 늘어났다. 그 결과, 과일이나 채소 씨앗, 간단한 원예 도구, 흙 등과 관련한 소비가 급격히 증가했다. 기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던 경향과 더불어 소규모 가정 원예 열풍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유망품목

1. 단열재, 친환경 건축자재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정부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에너지 개발, 녹색 건축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실천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실내 온도 유지에 쓰이는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단열재, 재활용 벽돌, 녹색 시멘트 등의 친환경 건설자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트남 정부는 각 지역별 스마트 도시 계획 시 '스마트'와 '친환경'을 결합한 도시 계획을 세우고 있어 앞으로 친환경 건축 자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전문가들은 현재 건축 자재 시장에서의 친환경 소재 개발 추세에 대하여 내구성, 에너지 절약, 기후적응력, 비용 등을 고려한 자재 개발이 지속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친환경 건축에 대한 관심에 비해 높은 가격은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 규모가 확대 되는데 있어 가장 높은 장벽이며, 따라서 제품개발과 가격 경쟁력 확보에 대한 고민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전기 배터리

2020년 베트남의 에너지 업계 B사 최고경영자는 베트남은 신규 전력 공급능력 증가율보다 전력소비 증가율이 높아 차후 전력난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 외에도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베트남의 전력 수급 불균형에 대한 염려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확보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수력, 풍력 등으로 발전 형태를 다양화 하고 있다. 이때 발전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이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A사 관계자는, 실제로 발전소 건립만큼이나 에너지저장장치 기술 개발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관심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 '18년 한국의 두산과 남동발전이 베트남 전력공사와 해상풍력, ESS 실증단지 구축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 외에 대중소 규모의 한국 기업들 진출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가 선포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과 같은 친환경 인프라 확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은 2020년에 빈 페스트에서 첫 국산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일부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구비되어 있기도 하다. 베트남 내에서 전기차 보급은 현재 매우 미미한 수준이나, 주요 선진국의 대대적인 투자와 관심도 증가로 인해 빠르게 성장할 유망 분야로 꼽혀 전기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 저장 기술과 장치에 대한 수요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3. 러닝 워치

2020년 베트남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대다수의 스포츠 경기가 대부분 취소되었지만, 여전히 마라톤 행사는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지난 10월 하노이에서는 ‘아세안 2020’ 마라톤 대회가 열려 고위급 공무원들을 포함한 약 5천명 인파가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인 행사를 치렀다. 베트남에서 마라톤 대회는 대기업이나 은행에서 자사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기도 하기에 부담 없이 참여하는 스포츠 행사 중 하나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저렴한 가격의 러닝 워치는 마라톤 주자들의 소소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러닝 워치는 현재 달리고 있는 속력, 시간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주자가 자신의 운동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디자인에 따라 스포츠 룩에 멋을 더하는 액세서리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선 제한 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축구나 F1 등의 스포츠 글로벌 스포츠 경기 개최 여부는 불확실 하다. 그러나 성공적인 국내 방역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마라톤 등과 같은 러닝 이벤트는 개최될 것이며 러닝 워치 판매율도 함께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금연 용품

베트남은 만 15세 남성의 45%가 담배를 피운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흡연 인구가 두텁고 담배 가격도 1달러 내외로 저렴하다. 그러나 최근 WHO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하노이에서 베트남 보건부 주관으로 개최된 ‘No Tobacco Week’에서도 이와 같은 흡연자들의 코로나19감염 취약성을 발표하며 베트남 사람들에게 대한 금연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흡연 시 호흡기와 손의 접촉이 많은 점, 흡연으로 인한 폐 건강 악화 등은 흡연자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노출 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감염 위험성은 흡연자들의 금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연 패치, 껌, 목캔디, 차 등 담배 대체 제품과 금연 보조제 등의 금연 용품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전문 주방용품

코로나19 이후 베트남 사회에 발생한 긍정적인 면 중 하나는 집에서 직접 요리하며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을 발견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저렴한 배달료와 식대로 외식 문화가 발달한 베트남에서는, ‘요리’란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해 준비하는 특별한 이벤트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에서도 인기를 누리고 있는 ‘쿡방’,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먹거리에 대한 수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베트남인들의 요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늘 해먹던 집밥과 같은 간단한 요리 뿐 아니라 양식, 한식 등 전문적 도구가 필요한 요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베트남인들의 쇼핑 목록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슬로우 쿠커, 전문가용 블렌더 및 믹서, 커피 메이커, 오븐, 제빵기 등 고가의 주방 제품들이 코로나 19 동안 관심 받기 시작했으며 요리 시간 등을 단축 시켜줄 다기능 조리도구도 주목 받고 있다.



6. 홈 시네마 장비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영화관 영업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집에서의 영화 관람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자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영화관 이용율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또한 과거 홈 시네마 장비는 고소득층만 구비 가능한 고가의 가전기기였으나, 이제는 홈 스마트 TV, 고화질 프로젝터 등의 출시로 가격은 낮아지고 품질은 높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홈 시네마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에 강세를 보인 OTT서비스 보급률과 결합하여 홈 시네마 관련 장비들도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프로젝터, 사운드 바, 스트리밍 플레이어 등 홈 시네마 장비 등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안방이나 거실 공간을 업그레이드하여 자신만의 영화관을 만들기 위한 액세서리 등도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7. 공기청정기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은 언제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가전제품의 마케팅 컨셉과 제품의 기능의 트렌드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특히 대기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사망자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깨끗한 공기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과거 베트남에서 미세먼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었으나, 최근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스모그와 대기오염이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공기 청정기 판매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2021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외출을 자제하고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으로 집안에서의 체류 기간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공기 청정기 구매 수요를 지속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19년 베트남의 1인당 GNI는 2,540달러로 세계은행 분류 기준에 따라 하위 중소득국에 속한다. 아직까지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고, 수입품의 경우 R&D와 더불어 가격 경쟁력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까다로운 시장이다. 그러나 최근 중산층의 성장, 젊은 인구의 구매력 증가는 나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지를 감안하는 등 소비에 있어 가격보다 무형적인 가치가 우선시 되는 경향을 만들고 있다. ’21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0년과 유사한 소비 패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베트남 시장에서도 주목해볼 법한 키워드로 전망된다. <끝>



2021년 베트남 PPP법 시행과 의의

법무법인 아세안 최지웅 변호사

jchoi@alfcounsel.com

2020년 베트남 정기 국회를 통과한 민관협력사업법(이하 “PPP법”)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금번 PPP법은 오랜 기간 베트남 내 핫이슈로 떠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크게 주목된 바 있다. 본 PPP법의 가장 큰 골자는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민간 및 외국투자의 증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함으로 사료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해외직접투자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선진화된 법적제도를 정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베트남 정부는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본 PPP법상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아직도 종전 관련 법규들에 비하여서도 다소 모호한 부분이 존치하는 것이 사실이나, 베트남의 해외투자 유입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로 한국투자기업들 입장에서 받아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본 PPP법과 관련하여 종전 PPP 관련 법령에 비하여 한국투자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분야

본 PPP법에서는 투자분야를 크게 다섯가지 세부분야로 규정한 바, 이는 교통, 헬스케어, 교육, 전력 수송망, 수도로 구분이 가능하다. 위 산업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법인세 혜택 및 토지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부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투자자본금 법적요건

본 PPP법상 프로젝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상 최소 2천억 베트남동 (미화 856만불) 이상 총 투자자본금 투자가 요구된다. 단, 프로젝트 소재지역에 따라서 최소 법정 투자자본금 규모가 축소될 수는 있다.



국가 투자 비율

본 PPP법상 특이한 부분은 PPP법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 소유의 지분이 프로젝트별 최대 50%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투자금은 토지 정지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본 PPP법상 프로젝트로 인정되어 민간 영역의 외국 투자자가 인센티브를 득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투자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본 PPP법의 취지대로 외국투자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매출 하락 리스크 분담 방식

본 PPP법에서는 프로젝트상 매출이 감소할 경우, 베트남 정부와 투자자간 해당 프로젝트별 재정계획상 약한 총 매출액의 75% 액수 대비 실제 발생 매출액의 손실액의 최대 50%까지 베트남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리스크 분담 조항은 리스크가 큰 교통인프라 사업과 같은 경우, 한국 및 기타 국가에서 도입 중인 BOT 방식과 유사하게 신규 투자자의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예컨대, 프로젝트 사업의 매출이 당초 목표치보다 25% 못미칠 경우 외국투자자는 부족분의 50%까지 베트남 정부로부터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프로젝트가 본 PPP법상 주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베트남 정부는 외국투자자들에 대해서 종전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예컨대, 프로젝트 사용 목적의 토지 및 토지사용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보장', 행정력 제공, 자산담보설정, 수익리스크 공동분담 등의 방식으로 외국투자자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차원 지원 제공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었다.

본 PPP법에서는 특히 '건설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인프라의 지속적인 구축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베트남 정부의 판단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PPP법 시행을 통하여 베트남 내 인프라 개발은 2021년부터 2029년 사이 연간 최소 6.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컨대 총 98개의 인프라 프로젝트 중에서 교량 및 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58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및 호치민을 잇는 남북고속도로망 프로젝트의 경우 종전 PPP 및 입찰 관련 법령 및 절차의 난해함으로 PPP방식으로 추진이 불발된 바 있다. 따라서, 본 PPP법 통과를 통하여 향후 베트남 내 필요한 상당 수의 교통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와 해외 선진기술력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 건설업체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바, 최소 향후 10년간 베트남 국가적으로 필요시 되는 건설인프라 분야 투자 시 한국 건설업체의 설계, 기술자문, 시공, PM, 각종 고부가가치 산업장비 기기 등 분야에서 베트남 PPP 시장을 매우 유망한 해외 진출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기업은 베트남 건설인프라 시장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바, 총 건설인프라 참여 기업 중 17%를 한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14%, 중국은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베트남 내 건설인프라 시장의 총 57%를 이와 같이 외국투자자가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기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건설인프라 시장 내 외국투자자 참여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베트남의 외국투자 유치 의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베트남의 인프라 시장 진출의 유망성과 본 PPP법의 등장으로 인한 종전 법령 대비 개선점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동시에 본 PPP법상 아쉬운 대목으로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투자금 수령에 관한 복수의 기존 법령과 본 PPP법상 조항의 충돌 소지가 잔존하는 점, PPP 계약 및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외국인투자자의 견지에서 분쟁해결의 구심점이 보다 예측가능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유리한 국제중재센터가 아닌, 기존과 같은 베트남 관할 인민법원에 귀속되는 점, PPP 프로젝트별 베트남 내 당국 인허가 심의절차에 긴 시간과 까다로운 준비를 요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몇가지 개선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본 PPP법은 성장가능성이 앞으로도 충분한 베트남이라는 유망 시장 진출 및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투자기업에게 긍정적인 베트남 입법 동향으로 사료된다. 무엇보다 베트남 중앙정부의 건설인프라 및 기타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선진 외국인투자자의 유입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지가 최근 몇 년간 외국인투자자 상당 수 개입된 최근 시점에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강력하게 표출되었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끝>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개정 기업법 TOP 10

로투비 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1. 소액주주 보호 강화

구 기업법(Law 68/2014/QH13; 이하 “2014 기업법”)에서는 보통주식 총수의 최소 10%를 6개월 연속으로 소유한 주주는 ①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위원 후보자 추천; ②이사회 의결서, 재무 보고서,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확인 및 발체; ③회사 운영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적법한지 아닌지를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발효된 기업법(Law 59/2020/QH14; 이하 “2020 기업법”)에서는, 우선 이 10% 기준을 5%로 낮췄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10% 주식이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이제는 5%만 있어도 그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소액주주의 권한이 그만큼 강화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증권법상 “주요 주주”의 정의가 5%라서 이번 기업법 개정은, 증권법의 정의와도 일치하도록 수정한 측면도 있습니다. 2020 기업법에서는, 또 권한을 나누어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위원 후보자 추천 권한은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 부여되고, 2014 기업법상 요구하던 6개월 연속 소유 조건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5%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회사의 이사회 의결서, 재무 보고서, 회계장부 등의 내부 서류를 확인하고 열람 및 발체할 권한, 특별한 경우 주주총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회사 운영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적법 여부를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2. 법적 대표자 책임 강화

2014 기업법에서는 ‘기업이 복수의 법적 대표자를 둘 수 있다’라고만 정하고 있었습니다. 2020 기업법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기업의 법적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법적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세부적으로 정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각 법적 대표자가 제삼자에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기업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연대 책임을 집니다.

3. 법인 인감 신고 의무 폐지

2014 기업법에서는 회사가 인감을 사용하기 전에 관계 당국에 법인 인감을 신고해야 했으나 2020 기업법에서는 이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즉, 본사, 지사, 사무소의 법인인감 형식과 내용, 개수, 형식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가짜 법인 인감을 만들어 사용하는 문제도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또 전자거래 관련 법률에 따른 전자서명 형식의 인감도 유효한 인감으로 인정합니다.



4. 현물 출자를 통한 자본금 출자 기간 연장

2020 기업법도 자본금 납입 기한을 기업등록증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정한 기존 규정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 납입이 기계나 설비 등의 현물출자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현물을 운송하고, 소유권을 회사로 이전하기 위한 행정적인 기간은, 90일 납입 기한에 포함되지 않도록 추가했습니다.

5. '국영기업'의 범위 확대

2014 기업법에서는 국영기업을 '국가가 정관자본금 100%를 보유하는 기업'으로 한정했었는데, 2020 기업법에서는 국영기업의 범위를 '국가가 정관자본금 50%를 초과해 보유하는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년까지는 국영기업이 아니었는데 '21년 올해부터는 국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영기업을 (1)국가가 정관자본금 100%를 보유하는 국영기업과 (2)국가가 정관자본금 50% 초과 100% 미만을 보유하는 국영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 분류별로 별개의 기업 지배 구조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6. 회사채발행 가능한 회사 형태 확대

2020 기업법에서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책임회사도 회사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 베트남인 개인 사업자도 주식회사(JSC) 형태로 변환 가능

숫 제조 등 가내 수공업 성격의 사업은 베트남인 개인 사업자 형태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14 기업법에서는 개인 사업자는 유한책임회사로만 전환할 수 있었는데, 2020 기업법에서는 주식회사 전환도 허용됩니다. 베트남인 개인 사업자 인수를 고려하시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관리자급 인력 변경 시 보고 의무 폐지

기업의 관리자는 주식회사 이사회 이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이나 감사, 그리고 회사의 법적 대표자가 아닌 법인장입니다. 2014 기업법에서는, 기업의 관리자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면 관계 당국에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2020 기업법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9. 휴업 전후 사전 통보 기간 단축

휴업 전이나 휴업했다가 업무를 재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기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2014 기업법상 "15일"에서 '21년 올해부터는 "3영업일"로 좀 짧아졌습니다. 혹시 코로나 때문에 휴업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 특수관계자의 범위 확대 및 관리 강화

2014 기업법에서는 회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법상 승인되지 않은 거래 때문에, 만약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거래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2020 기업법상에서는, 법상 승인되지 않은 회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거래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도 in-laws (처가, 시댁 사람들), 법적 대표자, 감사인 등이 추가되어 2014 기업법보다 늘어났습니다. 혹시 회사에 처가나 시댁 사람들이 일하고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1년 코로나 이후 베트남 은행권 전망

신한베트남은행 / 송현우 전략기획부장

alexhwsong@gmail.com

2020년 적극적인 코로나 방역 정책 및 저금리 정책으로 경제활동의 조기 정상화에 성공한 베트남은 2021년 코로나 안정과 함께 본격적인 반등을 꿈꾸고 있다. 2021년 베트남 경제 회복 시 은행들의 실적 또한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래 세가지 이슈에 대한 베트남 은행들의 대응에 따라 2021년 각 은행들의 성과는 차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020년 코로나 위기 상황하에서 기업 및 가계여신에 대한 이자감면, 만기연장을 지원했던 Cir010이 2021년 중 종료될 시 각 은행들이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현 Cir01은 이자/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에 대하여 상환연장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하지만 Cir01이 종료될 경우 이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은행들은 부실여신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Cir01 종료과정에서 정책당국과 시중은행들의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다.

<표1> 베트남 은행권 NPL 현황

연도	2017	2018	2019	2020년8월
NPL 비율 (VAMC 매각채권 미포함)	1.99%	1.91%	1.63%	1.96%
NPL 비율 (VAMC 매각채권 포함)	7.36%	5.85%	4.65%	4.49%

Source: SBV's website, SBVVAMC's websites, thoi bao tai chinh vietnam (MOF's official newspaper)



다음은 각 은행의 자본확충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은행들의 자본금 증자는 주로 민영은행 위주로 이루어졌다. 신주발행, 외자유치 등의 절차가 국영은행에 비해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1년에는 그동안 관련법령 미비로 지연되었던 대형 국영은행들의 증자가 이루어지고 2020년 민영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던 국영은행들이 다시 활발한 영업활동을 펼치며 민영은행과의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표2> 2020년 주요 증자 현황 (단위 Billion VND)

은행명	정관자본금 (증자전)	정관자본금 (증자후)	증감
Tien Phong Bank (TP bank)	8,565	10,716	+2,151
Techcombank	35,001	35,049	+48
ACB	16,627	21,616	+4,989
LienvienpostBank (LPB)	9,769	10,746	+977
OCB	8,767	10,959	+2,192
HD Bank	9,810	16,088	+6,278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쟁에서 어느 은행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혁신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2020년 중 코로나로 인하여 베트남 정부, 고객 모두 디지털의 필요성에 대하여 절감했다. 이에 많은 베트남 은행들이 디지털에 사활을 걸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 또한 관련 제도 및 법령 정비를 통해 은행들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중 어느 은행이 디지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앞서나갈 수 있는가가 향후 은행권 판도를 바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끝>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신년특집] 2020년 중요 문의사항 상담사례

법무법인(유) 세종 박영수 변호사

ysupark@shinkim.com

(문의 1) 베트남에서 자주 이용되는 담보권인 질권과 저당권은 한국과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베트남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담보권인 질권(pledge)과 저당권(mortgage)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설정자가 담보물을 이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는 점에서 담보 대상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저당권을, 부동산 외인 경우 질권을 각 설정하는 한국의 구분 방법과는 다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류	구분	특징
질권(Pledge)	설정자의 담보물 이전 O (민법 제309조)	- 담보물에서 발생하는 과실수취권이 질권자에게 있음 (제314조 제3항) - 질권자에게 질물 처분 금지 의무(제313조 제2항) ¹
저당권(Mortgage)	설정자의 담보물 이전 X (제317조)	- 담보물에서 발생하는 과실수취권이 원칙적으로는 설정자에게 있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과실수취권 또한 피담보채무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있을 수 있음(제321조 제1항) - 설정자에게 저당물 처분 금지 의무(제320조 제8항)

¹ 베트남 민법에서 질권(pledge)은 설정자가 담보권자에게 담보물을 이전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담보권자가 기본적으로 담보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mortgage와 같이 설정자의 담보물 처분 제한 규정을 특별히 두지 않고 오히려 이와 같이 질권자의 질물 처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베트남에서 부동산(토지사용권, 건물소유권)에 관한 담보 설정은 관할 시·성의 자연환경국 산하 토지등록소에서 LURC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부동산 외의 자산(동산, 채권 등)에 관한 담보 설정은 담보등록소(National Registration Agency for Secured Transactions, "NRAST")에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효를 갖출 수 있습니다.

담보 등록 절차와 관련해서는 담보대상 자산을 부동산과 부동산 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i) 부동산의 경우에는 관할 시·성의 자연환경국 산하 토지등록소에서 LURC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방식으로(Joint Circular 09/2016/TTLT-BTP-BTNMT 제4조 제1항 제 a, b호, 제6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제a호), ii) 부동산 외의 자산은 NRAST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각 진행됩니다(Circular No. 08/2018/TT-BTP 제1조, 제5조, 제6조 제7항).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문의 2) 한국에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베트남의 차주가 베트남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무가 있는데 한국에서의 대출을 통해 위 베트남 국내 대출채무를 상환(refinancing)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를 받았습니다.

(답변 2) 베트남 현행 관계 법령에 따르면 베트남 역외 대출채무를 통해 국내 대출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Circular No. 12/2014/TT-NHNN 제5조에 따르면 베트남 차주가 역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한정됩니다.

- 차주 또는 차주가 직접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다른 회사가 역외(해외) 대출을 통해 재원을 조달받아 사업 계획 또는 투자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경우
 - 대출 비용(expense)의 증가 없이 차주가 받은 역외(해외) 대출채무를 조정(restructure)하는 경우
- 따라서 베트남 역외 대출로 국내 대출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합니다. 역외 대출을 법상 허용된 사유 외에 사용하는 경우 차주에게 아래와 같은 법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페널티 관련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역외 외화 대출의 경우 베트남 중앙은행(SBV)으로부터 사전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SBV가 위 Circular 12에 위배되는 실제 목적을 발견하는 경우 차주에 대하여 VND 300,000,000 – 400,000,000 상당의 행정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역외 외화 대출 등록 승인 취소 관련

Circular 03/2016/TT-NHNN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역외 외화 대출 등록 승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역외 대출금 인출 이전

- (i) 차주가 제출한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신청서에 역외 대출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의 확인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기적인(fraudulent) 정보를 기입한 경우
- (ii) Circular 03에 규정된 역외 대출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절차에서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당해 신청서에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 SBV의 확인서 내용에 오기(error)를 초래한 경우
- (iii) 역외 대출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신청에 따른 확인서가 Circular 03에 규정된 관할 기관에서 발급되지 않은 경우

(2) 역외 대출금 인출 이후

역외 대출 등록은 위 (1)항의 (ii)와 (iii)의 경우에만 취소됩니다.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문의 3) 베트남 역외기관의 경우 부동산(토지사용권, 지상 건축물)에 관한 담보권 설정이 불가능할지요? 베트남에서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설정이 가능한 주체는 베트남 역내의 Credit Institution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역외 기관의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설정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임차료가 연납인 경우 토지사용권에 관한 담보권 설정 및 매각 처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답변 3) 네,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베트남 토지법 제174조 제2항 제d호, 제175조 제1항 제b호와 제183조 제2항 제b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 d호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운영 허가를 취득한 금융기관만이 부동산에 관한 담보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베트남 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매년 토지임차료를 납부하는 방식의 토지사용권은 매각, 담보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토지법 제183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외투법인의 권한을 토지임차료를 매년 납부하는 경우와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연납인 경우는 일시납인 경우와 달리, 토지사용권에 관한 매각, 담보설정과 같이 토지사용권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고, 단지 지상의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매각, 담보설정이 가능할 뿐입니다.

(문의 4) 외투법인이 베트남에서 부동산 개발을 위해 베트남 현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사용권을 직접 매수할 수 있는지요?

(답변 4) 외투법인은 토지사용권을 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토지법 제169조 제1항은 토지사용권의 인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외투법인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사용권 가액에 상응하는 투자 자본금을 인수(제b호)
-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 건설 프로젝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토지할당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인수(제g호)
- 정부로부터 토지 임차를 받음으로써 토지사용권을 인수(제h호)
- 관할 인민위원회가 인정한 토지 분쟁의 화해를 통한 토지사용권을 인수(제k호)
- 추가로 합작투자법인은 자본금으로서 토지사용권 출자를 받음으로써 토지사용권의 인수가 가능합니다(제f호)

따라서 외투법인은 토지사용권을 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토지법 제169조 제1항 제b호에서 베트남 현지 법인, 개인은 토지사용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투법인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외투법인은 주로 베트남 부동산사업법상 부동산 프로젝트 양수 또는 부동산 개발 법인의 지분 인수를 통해 베트남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문의 5) 베트남은 토지사용권에 있어서 사용기간이 있는데 만약 토지사용기간만료 시 연장이 불가한 경우, 지상 건물이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5)

(1) 토지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지

토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토지 사용권자가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였을 당시와 같이, 즉 지상 건물이 없었던 상태로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정부에 반환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일반법인 민법에서의 임대차 규정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동법 제482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을 임차 당시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사용권자와 정부 간의 토지임대차계약에서 토지사용기간만료 시 지상 건물의 처리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토지 사용권자는 원칙적으로 지상 건물을 철거 후 토지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²

(2) 지상 건물에 관한 보상

토지법 제65조 제1항 제(d)호, 제92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한 토지 임차에 있어 기간의 연장 없이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정부가 지상 건물에 관한 보상 없이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상 건물에 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에 반해, 토지법 제83조, Decree 47/2014/ND-CP 제19조에 따른 지원금의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자가 생산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물에 관한 보상 조항과 같이 토지 사용권자가 토지사용기간만료에 따라 정부에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를 특별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사용권자는 토지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한 경우 정부에 지상 건물에 관한 직접적인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나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² 다만 정부 입장에서 해당 부지의 도시개발계획이 변경되어 더 이상 해당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한 토지사용을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부지에 공적 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지상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도 손실인 경우 철거의 상황까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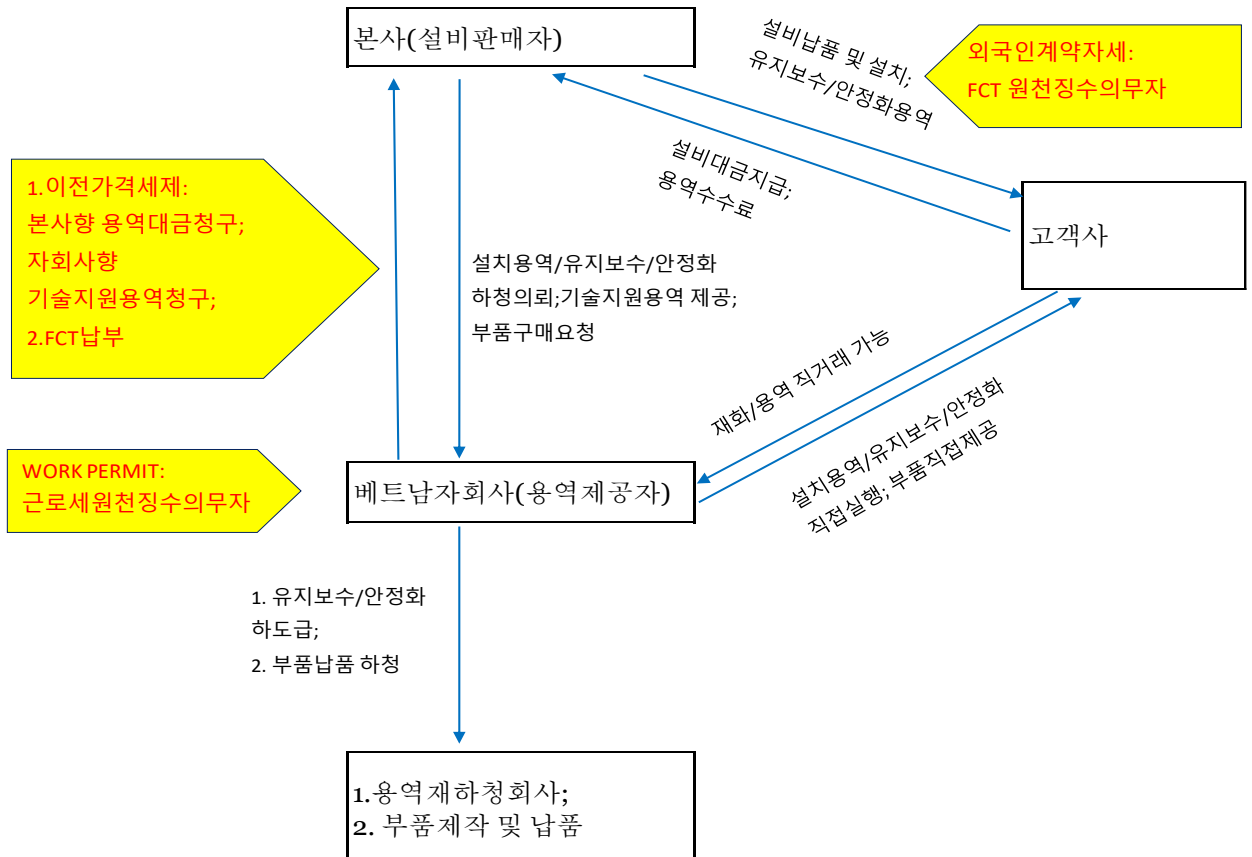
[신년특집] 2020년 중요 문의사항 상담사례

서우회계법인베트남 대표회계사 조성룡

csgs@seouvietnam.com

(문의 1) A사는 100% 한국본사가 투자가 설립한 Foreign direct Investment회사로서 본사가 기 판매한 설비에 대한 설치, 유지보수 또는 자문용역서비스를 본사의 베트남내 고객사내에서 본사에 요청에 의거 베트남자회사가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본사의 직접 출장입국이 불가하여 점차적으로 고객사에 대한 직접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수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자회사 유의해야 할 베트남내 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 1) A사의 거래구조는 하기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3자 무역거래로서 본사는 설비판매자이고, 베트남자회사는 본사향 하청용역서비스 제공자, 베트남내 고객사로 구성되는 3자간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베트남 자회사와 본사가 유의해야 할 제세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해당거래	세목	3자거래의 세제발생	설명
자회사가 부품 구입시	매입부가세	매입부가세발생	매입부가세는 매출부가세와 공제나 현금환급대상임.
	법인세	매입원가발생	수입시: 수입면장 및 통관서류, 해외송금증; 국내구입시: 구입계약서, VAT세금 계산서, 구입리스트, 계좌송금증
자회사가 본사에 부품 수출 및 용역 제공시	매출부가세	매출부가세 or 영세율	EPE(보세구역)에 매출 수행대상임 을 소명할 경우 영세율임
	법인세	부품상품매출인식	INLAND수출면장, 수출통관서류 보 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용역매출인식	특수관제자간 매출액의 가격산정기 준 계약서에 언급 및 작성(이전가격 대비); 영세율 또는 10%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고객사EPE여부에 따라)
본사가 고객사에 수출시	매출부가세	한국세법을 따름	외화획득재화수출은 영세율, 용역 수출은 해외에서 공급되면 영세율 적용
	법인세	상품매출	K-GAAP에 근거한 매출인식
		용역매출	K-GAAP에 근거한 매출인식
	외국인계약자세	설비구입금액 1%; 순수설치용역매출:2%; 용역매출: 5%	고객사가 원천징수하고 납부함.
자회사가 고객사에 인도 및 제공시	매출부가세	해당사항없음	본사가 공급받는 자이므로 고객사 에 직접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법인세	재화매출 해당사항없음	INLAND수출면장, 수출통관서류 보 유, 본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용역매출 해당사항없음	본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함.



(문의 2) A사는 본사에게 완제품을 납품하는 100%본사가 투자한 FDI회사입니다. 본사의 소속직원들도 일부 출장와서 자회사의 제품제조에 대한 기술지원 및 품질관리, 마케팅업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출장자에 대해선 베트남자회사가 노동허가증,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은 상황입니다. 베트남 자회사는 본사출장자들에게 현지에서 해외출장비(출장일비)와 현지 체재비, 숙박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 자회사에는 한국본사가 파견한 한국 임직원이 베트남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 및 노동허가증, 비자를 신청해 수령한 상황입니다. 근로자에 베트남 세무서는 정기세무조사시에 한국인 본사출장자에 대해 과세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사의 소속 임직원에게 베트남 자회사가 근로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2) 이하는 한국인 출장직원의 베트남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여부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소득세 부담자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베트남 근로소득세법상 1억원 기간 중 183이상을 베트남내 거주하거나, 입국일 이후12개월의 기간동안 183일 이상을 체재하거나, 또는 항구적 주거를 베트남내에 가진 경우(외국인의 거주증/비자에 기재한 주거지를 포함함)는 베트남의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183일 이상의 임차한 주거지를 가지거나, 그 개인이 타국가 거주인임을 소명하지 못하면 베트남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거주자의 정의는 조세조약과 베트남의 관련 circular를 통해 검토해야 하나, 베트남 세무서는 해당 거주자 주장을 고수하고 있음). 거주자 판명이 입국일이 표시된 여권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급여지급자 유무/워크퍼밋/거주증의 발행유무와 상관없이 자회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내 입국한 한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83일 이상 체재한 거주자는 베트남 내외에서 지급된 모든 개인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소득은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비거주자 근로소득은 단일세율 20%로 과세됩니다.

○ 근로소득세 신고코드

과세되는 소득을 가지는 개인들은 각각의 신고코드를 가지고 2곳 이상의 지급자를 가진 근로자는 자가신고해야 합니다(한국의 종합소득세신고와 유사함). 단, 근로소득을 가지는 개인들로서 베트남내에서 근로소득을 전액 지급하는 오직 한 곳의 고용주가 존재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자회사를 통해 개인신고 코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곳 이상의 근로소득을 가진 개인들은 각자의 거주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개인 소득세 신고코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한국에 소재한 한국인 근로자들은 개인별로 각각의 소득세 신고코드를 신청하고 수령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요청하는 자회사가 각각의 근로소득세 신고납부내역을 근로자별로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관할세무서도 자회사 세무조사시(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에 대해) 한국인 출장 및 파견자들에 대한 근로세 납부실적을 재검할 것입니다.

한편, 베트남내에서 자회사가 현지 채용한 베트남인 또는 주재원인 한국인 근로자는 당연히 베트남법에 의거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의 수령일의 익분기 첫월 30일까지 월별 예납신고를 수행해야 하며, 연기준의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근로소득세의 연기준 납부액을 익연도 90일 이내에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베트남을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출국후 45일 이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과다납부한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신고코드가 존재하는 개인에 한해 환급 또는 향후 납부할 근로소득세와 상계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의 파견자는 항상 한국 국세청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만 세무신고가 종결됩니다.

○ 한국인 근로자 유형 및 근로세 규제

당사자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재원은 본사직원으로서 파견온 후 자회사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고 work permit, 상용비자/거주증 획득해야 함. 급여 및 제수당 지급자는 본사가 전액지급하거나, 자회사가 급여를 전액 지급하거나 분할분담하는 경우임. 자회사와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급여수준을 명기함.
- 출장자는 본사직원으로서 파견지시서 없이 출장명령서로 대체되며, 본사가 급여를 지급하나, 출장기간만 자회사가 일부비용을 지급할 수는 있음.
- 현지채용한국인이나 로컬인은 근로자로서는 오로지 자회사의 직원으로만 등재되므로 자회사가 급여를 전액 지급함.

<한국인 근로자 유형 및 근로세 규제>

내역		주재원	출장자(상용비자가 필요한 15일 이상 체제자)	현지 채용
급여분할방식	본사와 자회사가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개별신고	근로자 개별신고	N/A
	본사가 전액 주재원과 출장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개별신고	근로자 개별신고	N/A
	자회사가 전액 지급하는 경우	자회사 통합대행신고	자회사 통합대행신고	자회사 통합대행신고
거주 관련	WORK PERMIT	대상임	대상임	대상임
	VISA/거주증	대상임	대상임	대상임
	베트남내 사회보험, 건강보험	미대상임(*)	미대상임	대상임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종류	자회사와의 근로계약서	본사의 근로계약서	자회사와의 근로계약서

(*) 사회보험료 면제조건을 충족시에만.



(문의 3) A사는 코로나사태 이후 사업의 지속적 유지가 불가능한 매출감소로 누적적자가 증가하고 회사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2020년 하반기부터 매출을 기록하지 못하고 회사의 청산과 휴면신청을 고민하다가 휴면신청을 2021년부터 실행하고자 합니다.

회계와 세무적으로 고려할 휴면기업의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3) 휴면회사의 절차 및 이슈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이슈사항
휴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최장 1년, 2회 연속 신청가능함. 신청전에 매입부가세환급(해당시에만) 및 정기적 세무신고서 작성제출해야 함. 휴면신청후에는 휴업전 발생한 매입부가세의 환급이라도 대응되는 매출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매입부가세로 환급불가 처리될 위험 큼.
Business registration office에서 수령증 수령함	
휴업허가증 수령	세금계산서 최종발행가능일; 휴업신청년도까지는 회계감사보고서, 법인세연말정산 의무수행해야 함.
휴업중 세무신고 의무 중단	매입부가세 공제불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불가함. 휴업허가증 수령후 익년도부터는 외부감사의무 중단, 법인세 및 정기세무신고 및 납부의무 중단

(문의 4) A사는 본사에게서 수입원재료를 구매한 후 완제품을 납품하는 100% 본사가 투자한 FDI회사입니다. 본사의 소속직원들도 일부 출장와서 자회사의 제품제조에 대한 기술지원 및 품질관리, 마케팅업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설립 후 2개년간은 적자를 기록한 후 2019년도부터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세전이익/매출 비율은 2%를 기록하였습니다. 근자의 정기세무조사 중 세무서는 자회사의 세전이익/매출비율이 너무 낮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본사와 자회사가 맺은 기술지원계약에 근거한 매출의 3% 기술지원료를 모두 부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회사는 별도의 이전가격보고서를 비치하지 않았고, 이전가격신고서를 매년 법인세신고시에 제출하였으나, 경리장이 정상가격산정방식을 명기하지 않은 이전가격신고서를 제출만 했습니다. 기술이전료를 부인하고 세전이익/매출을 강제로 증액조정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가요?

(답변 4) 이전가격과세제도(Transfer pricing)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내용: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정의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과세액 결정
- 정상가격산출방식: 비교가능한 독립적가격방법(CUP), 원가가산 마진방법(Cost plus Method), 재판매가격 방법(RP), 비교가능한 이익분할방식(PSM), 거래순이익율방식(CPM or TNMM)
- 특수관계자의 정의: 관계사간 지배율이 일반관행보다 높은 25%이상이거나, 다른 기업의 사업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인/법인, 주요 금융제공자(회사자본금의 25%이상 금액의 대여자나 총중장기차입금의 50%이상을 대여하는 자)도 이에 해당함.
- TP Return 및 TP Documentation 베트남세법상 매년 작성의무



회사의 경우, 특수관계자인 본사와 용역수수료 지급거래 및 원재료구입, 완제품판매거래라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가격세제에 해당하는 거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 이전가격세제에 근거한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회사가 정상가격산출방식을 소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인정과세로 강제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TP 신고서와 이전가격보고서를 비치해야 합니다.

○ 기술이전료를 포함한 특수관계자간 용역수수료 지급에 대해 용역수수료거래를 수행시에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자회사에 현금이 있는 한 주기적인 본사로 송금가능.

단점:

- FCT(법인세 5%, 부가세 5%)부담함. 송금한 자회사는 자회사비용처리의 세무조사 위험에 노출됨.
- 이전가격세제에 의거 송금액의 절대값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증대.
- 로열티수입으로 간주되면, FCT(법인세 10%)는 더 부담이 증대할 위험 존재.
- 본사의 출장자를 통한 기술지원용역이나 본사가 자회사의 수입을 위해 노력한 마케팅지원용역의 경우, 베트남내 체재한 본사출장자의 근로소득세 과세됨.
- 용역수수료에 대한 관할세무당국의 입장 및 업체 사례는 어떠한가?

정기세무조사시 필요증빙을 준비하여 세무조사시 법인세법상 업무관련 비용인정을 다뤄야 합니다. 출장자의 근로세 노출을 각오한다면, 출장자의 실재작업시간 투입시간을 소명하고 실재성과 업무관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무조사시 본사에 대한 용역수수료 지급은 업무무관경비 주장이 지역세무서에서 주장하고 있어서 자회사비용인정여부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 이전가격세제위험의 고려

특수관계자간 용역수수료의 과소는 항상 이전가격세제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세제위험을 고려컨대, 단순히 용역수행을 위한 출장자의 현지급여(본사지급급여 제외)와 현지 체재비의 지불만을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 결정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실비정산금액이라 소액만이 청구가능하다는 단점과 근로소득세 노출 및 신고 의무는 항상 발생합니다.

- 기술지원료 VS 마케팅지원료

기술지원료는 근로세 노출의 중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면, 마케팅지원계약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 베트남 출장없이(즉,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없이) 자회사의 판매계획 및 마케팅활동을 지원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사에 마케팅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는 특관자간의 거래이며 업무무관경비로 간주되지 않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회사가 용역수입을 위한 마케팅지원을 소명해야 하므로 소명가능 증빙서류, 본사의 실재활동을 검토해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끝>



2020년 우리 진출기업의 주요 베트남 관세·통관 FAQ

하노이 무역관 김태윤 관세사, 호치민 무역관 박주희 관세사

COVID-19 확산세로 전세계 교역량이 둔화 추세로 전환됨이 예상되는 가운데, 베트남의 무역 흑자규모는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8월까지의 총 수출입 교역액은 3363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베트남의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공고히 되는 상황과 대조적으로, 베트남 내의 관세행정 실무 관행은 복잡한 법률체계와 세부 지침 미비에 따른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률해석으로 진출기업들에게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 누적 투자규모 1위 국가로 상당수 우리기업이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관세행정 환경은 위험요인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KOTRA 하노이 무역관, 호치민 무역관에서는 FTA 활용지원센터를 통하여 FTA 관련 상담은 물론 베트남 통관법률에 관한 애로사항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주요 통관 FAQ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Q1. 베트남에서 조미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조미김 관련한 세관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HS 코드 착오신고에 대한 징벌적 관세추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조미김의 수입 HS 코드분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2017년 9월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조미김’의 HS CODE를 2106.90호에서 2008.99호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국제 HS코드 분류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HS 2106.90은 일반 가공식품을 의미하며, HS 2008.99는 조제된 식물성 생산품을 의미합니다.

조미김의 국제적인 교역이 증가하면서, 조미김을 단순 가공식품으로 취급할지 식물성 생산품으로 취급할지에 대한 분쟁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HS코드 분쟁은 HS코드 6단위를 기준으로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FTA 적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베트남인들은 김에 많은 영양소와 무기물이 포함돼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김 조제품에 대한 수용도가 매우 높았으며 베트남 시장에서 김 관련 제품은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더불어 한국 김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우리 유통기업도 다수 진출하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관세행정 관행상 조미김을 HS 2106.90의 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왔으나, 2017년 세계관세기구의 HS 코드 결정에 따라서 HS 2008.99로 변경하여야만 했습니다. L사, E사를 포함한 다수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서 조미김을 수입판매하는 상황에서, 기존 HS 코드(HS 2008.99)를 사용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하던 기업들이 조미김 관련 베트남 세관의 조사에서 적발되어 추징을 당하였습니다.



베트남의 조미김 관련 관세율은 경합 HS코드를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WTO MFN세율을 기준으로 베트남에서는 기존 HS 2106.90보다 HS 2008.99가 25%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HS 2008.99는 한-베트남 FTA 협정 적용가능 여부에 따라서 40%의 세율차이가 있습니다. 세율 차이가 수출입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베트남 수입신고 시 HS CODE를 2008.99호 신고하고 원산지증명서도 HS 2008.99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조미김 관련 HS 코드의 수입 관세

HS코드 (베트남)	설명	수입 관세 (%)			부가세 (%)
		MFN	아세안 FTA	한-베 FTA	
2008.99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99.30	과실 및 견과류를 제외한 식물성 생산품 (설탕, 감미료 등 첨가 무관)	40	미적용	0	10
2106.90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조제 식료품				
2109.90.99	기타	15	0	0	10

출처: 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한-아세안 FTA는 한국산 조미김에 대한 관세혜택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FTA 적용을 원하는 경우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야만 합니다.

Q2. 금년도에 베트남 세관에서 산업용 X-ray 장비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해당 물품을 반송하지 못하도록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행정처분이 맞는지요?

A2. 중고 의료장비는 베트남 법률 No. 69/2018/ND-CP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품목이 수입금지되는 조건은 1) 중고장비일 것, 2) 의료용 장비일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일부 의료기기는 베트남 정부에서 법률(수출입 의료기기의 HS 코드 지정에 관한 법률 No.14/2018/TT-BYT)로 HS코드를 지정하고 있는데, 의료용도의 X-ray 장비는 HS 9022.14.00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합니다.



상기 두 가지 법률 규정을 베트남 세관에서 왜곡되게 적용하여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X-ray 제품이 의료용이 아니더라도 수입신고 HS코드를 HS 9022로 변경하도록 강제.
- X-ray장비가 중고기계가 아니더라도 수입금지 품목이라는 이유로 수입신고를 반려.
- 수입금지 품목이라는 이유로 (반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압류하여 반송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상황으로 품명에 X-ray를 포함하여 수입하는 우리 기업의 생산용 장비가 비록 공업용 검사기기이거나 중고가 아닌 새제품인 경우에도 수입신고도 수리되지 않고 반송신고도 처리되지 않아 사실상 압류 상태로 수개월 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세관 행정처리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베트남 관세당국의 수입신고수리 불가의견이 명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료장비를 수출입하는 우리기업의 창고료, 물류비용 등 손해가 상당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는 X-ray 장비에 대한 수입진행에 신중을 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본 문제에 대하여 대사관 및 KOTRA 차원에서 베트남 정부에 이의제기 중에 있음**

Q3. 수입신고 당시에 FTA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세관에서는 FTA 사후적용을 하고 관세환급을 받는 과정에서 특정요율(약10%)의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베트남 세관 FTA 사후적용 수수료 징수가 합당한 것인가요?

A3. 각 FTA 협정은 수입신고 당시에 원산지증명서류가 구비되지 않아 협정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FTA 사후적용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사후적용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수입신고 당시에 FTA 사후적용 예정임을 표시하여 신고할 것.
- 수입 후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제출 할 것(환급신청 병행).
- 다만, 한-베트남 FTA는 예외적으로 사후제출 기간 1년임.

FTA 사후적용은 협정에 근거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수입 당시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는 수입신고 당시 사후적용 의사를 밝히고, 정상적으로 관세를 납부한 후 사후에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세관 관행은 FTA 사후적용 후 환급 받을 때에 10% 가량의 수수료를 공공연히 징수하고 있으며, 행정비용 혹은 이자명목으로 간주하기에는 그 요율이 높은 편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사후적용에 대한 귀책 성격으로 징수되는 것이라면 명백한 협정 위반임에도 공공연히 징수되고 있으며, FTA 협정은 양자 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임에도 베트남에서 사후적용에 1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혜택을 10% 가량 훼손하는 것이므로 협정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해당 관행이 베트남 정부와의 통상 협의에서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고려중입니다.

Q4. EU-베트남 FTA에는 한국산 원단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원산지를 누적하는 역외교차누적 조항이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현재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U-베트남 FTA의 한국산 원단 특혜조항의 실무적용은 언제 이루어 지나요?

A4. EVFTA 협정문은 한국산 원단이 베트남으로 수입되어 섬유·의류제품으로 제조되어 EU로 수출되는 경우에 한국산 원단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상 단계부터 해당 조항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 바 있으나, 2020년 8월 1일 EVFTA가 발효되었음에도 해당 조항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의 해당 조항 발효에 관한 서명이 필요하고, 이를 EU 정부에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의 베트남 방문 당시 한·베트남은 양국간 원산지 누적 교환각서 체결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EU-베트남 FTA를 적용한 베트남산 의류제품의 EU 수출 시 제조과정에 사용된 한국산 직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는 원산지 누적 규정의 혜택을 우리기업이 수혜받을 수 있는 절차의 발효를 목전에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EU정부로의 통보절차가 진행되면, 베트남 정부의 해당 조항에 대한 실무적용 절차가 사전에 반드시 지침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KOTRA 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중 시행예정인 EU-베트남 FTA 한국산 원단 특혜조항에 대한 세부일정이 공개되는 대로 일반에 규정 분석자료를 공개하여 우리기업의 수출거래선 다변화를 보조할 예정입니다. <끝>



2020년 베트남 경제, 2분기 어려움을 4분기가 하드캐리

- 베트남 9월부터 산업생산과 수출 급증으로, 상반기 실적 만회 전망
- 2020년 FDI 및 수출 부문에서 베트남 내 중국 영향력 신장

베트남,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19 경제 타격 최소 전망

2020년 10월, 베트남 연내 마지막 국회 회기(14대 국회, 10차 회기)가 개최했다. 응웬 쉐언 폭(Nguyễn Xuân Phúc) 총리는 올 1~3분기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베트남의 경제지표도 예년보다 감소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통제된 덕에 국가 경제는 위기에 빠지지 않고 안정을 유지한 '성공적인 한 해'라며 정부 평가를 국회 보고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낙관된 전망, 왜?

2020년 베트남의 전망이 타 국가 대비 밝게 비춰진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 통제에 따른 내부적인 사회·경제 혼란 축소다. 베트남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한 타격은 3~4월에 1차, 7~8월에 2차로 있었는데(3차는 11월 말에 터졌다), 각 감염 사태가 신속 진압되고 1~3차 시점 사이마다 '지역사회 감염 0건'이 약 3개월 간 지속된 덕에 시장이 손쓸 틈 없이 경색되는 일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에서 생산이 마비되는 일은 없었고 소비 순환이 이어져,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2차 사태가 진정되고 3분기에 접어들며 현지 경제가 점진 반등되기 시작했다.

시사점

11월 말 항공 승무원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염 사태(3차)처럼, 베트남에도 변수는 언제나 있다. 그러나 그 간의 주기를 고려하면, 베트남의 최대 명절인 설이 돌아오기까지 2~3개월 동안은 다시 잠잠한 상황이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11월과 12월 각종 할인행사 및 쇼핑 시즌을 따라 수출 생산 발주 건이 대폭 증가했으므로 4분기 성장률은 3분기보다 낮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겠지만 연말 행사, 오는 2월 설날, 1~3월 현지 결혼 성수기 등 자국 소비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기회가 남아있다. 2021년은 베트남 지도부가 교체되는 해다. 2016~2020년 정부가 무역협정을 다수 체결해 세계 시장에 편입할 길을 닦고 현지 투자 환경을 개선할 틀을 다졌다면, '21년 교체될 정권은 그 실속을 탄탄히 다지는데 더욱 몰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팬데믹으로 위기가 상시 공존한 이 시기에 베트남은 수출 주도 경제 성장으로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특정 국가에 집중된 수출 의존도 때문에 자국 산업생산이 그 여파를 밀접히 체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1년에도 베트남은 고부가가치 공정 및 생산 품목, 자국 내 원부자재 산업 육성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베트남 중부지역 스마트시티 로드쇼 참관기

- KOTRA 다낭무역관, 코로나19 뚫고 로드쇼 개최
- 베 중부지역, 우수한 ICT기반과 확고한 정책의지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진출 유망

KOTRA 다낭무역관은 지난 12월 3~4일 다낭 힐튼 호텔에서 ‘한국-베트남 중부지역 스마트시티 로드쇼’를 개최했다. 메인 행사 전날인 3일에는 사전 신청기업 위주로 하이테크 파크와 IT파크 등 다낭시 주요 산업단지를 시찰했으며, 4일에는 양국 스마트시티 관련 기관과 기업 관계자 약 1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미나와 1:1 비즈니스 상담회가 열렸다.

다낭 하이테크 파크 및 IT파크 현장 시찰

현장 시찰은 다낭 하이테크파크와 IT파크를 방문하여 입주조건(임대료, 인센티브 등)에 대한 설명과 입주기업 및 공장 부지를 시찰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다낭 하이테크파크는 총 면적 1128.4ha로 바이오테크, ICT 등 지정 품목에 대해 토지비용 면제, 기업 소득세 감면 등 다른 산업단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IT파크는 총 면적 341ha로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5년에서 50년까지 토지 무상임대, 15년간 법인세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베 중부지역 스마트시티 협력 세미나

이종섭 KOTRA 동남아대양주 지역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세미나에서는 조한덕 KOICA 베트남 사무소장이 베트남 중부지역 스마트시티 밸리 ODA 협력계획을 안내하고, NIPA와 LG CNS가 한국의 스마트시티 사례를 공유하는 등 먼저 한국측 연사들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베트남 측에서는 다낭시와 투아티엔후에성 정보통신국에서 베트남 중부지역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과 프로젝트 협력방안을 소개한 데 이어 FPT의 판 탄 선(Phan Thanh Son) CBDO(개발 책임자)가 한-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협력분야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베 중부지역 스마트시티 협력 상담회

4일 오후에 진행된 한-베 스마트시티 협력 상담회는 다낭시 정보통신국, 교통국 등 현지 정부 부처 및 베트남 IT기업 13개사와 다수의 한국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프로젝트 상담 20건, 투자진출 상담 16건, 일반 비즈니스 상담 16건 등 총 52건의 온·오프라인 상담이 진행되었다. 상담 내내 정부 부처뿐 아니라 현지 IT 기업들도 우리 기업들의 첨단기술에 큰 관심을 가져 향후 한국 IT기업들의 본격적인 중부지역 진출이 기대된다.

이번 로드쇼는 하노이와 호치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다낭시의 우수한 ICT 개발 여건과 산업단지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특히, 다낭시는 11년 연속 베트남 ICT지수에서 1위를 달성하며, 향후 ‘베트남의 실리콘밸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다낭시는 관광업에 치중된 경제구조 탈피를 위해 정책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에 우리 기업들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베트남 C2C 시장에 찾아온 변화의 바람

- 이커머스 시장 성장에 따라, C2C시장 동반 성장 기대
- 다양한 플랫폼 등장에 시장 경쟁 치열

코로나 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 시장 성장세 유지

2020년 베트남 전자상거래협회(VECOM)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도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은 전년도 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장 규모 약 115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2016-2019년 연평균성장률(CAGR)은 30%에 달했다.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은 2016년부터 빠르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전자상거래협회에 따르면 코로나 19 영향이 내수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치면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20년에도 성장률 30%를 기록해 시장 규모 약 15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주요 C2C 플랫폼

페이스북의 기본 기능인 마켓 플레이스(Marketplace), 찐똥(Cho Tot), 쇼피(Shopee), 센도(Sendo), 라자다(Lazada) 등이 현지에서 가장 보편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Q&M가 실시한 2019-2020 이커머스 시장 조사에 따르면 쇼피, 라자다, 틱키, 센도 등이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점유율은 핸드캐리 및 소셜미디어 등 기존 거래 방식이 차지했다.

시사점

최근 베트남 이커머스 산업(B2C 및 C2C)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젊은 베트남 인구 구성, 인터넷 환경 개선,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 등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다. 코로나 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쇼피, 센도, 라자다 등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갔다. 특히, 페이스북 마켓 플레이스, 찐똥 등 C2C 기반 플랫폼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결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 총 거래량 중 약 70%는 하노이시 및 호치민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협회 또한 구글, 테마섹, 베인 앤 컴퍼니의 지역 보고서를 인용해 '지역별 불균형은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 성장의 방해 요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낮은 신뢰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베트남은 현금결제(COD)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심리도 있으나, 결제체계 및 판매자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보여주는 반증이다.





베트남, 화장품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2021년

- 코로나19로 보따리상 감소

- 2021년부터 립 메이크업 관세 20%→5%, 아이 메이크업 22%→5%

고공성장하던 베트남 화장품 시장, 코로나19로 주춤

영국 기반의 시장조사업체 Euromonitor는 2020년 베트남 색조 화장품 시장의 전년대비 성장률은 2%, 스킨케어 시장은 9.7%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베트남 색조 및 스킨케어 화장품 시장은 지난 5년 사이 연평균 각각 14.8%, 10.5%씩 성장하며 탄로를 걸어왔으나 2020년은 팬데믹 여파로 전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베트남 화장품 시장에 어떤 변화 줬나

(1) 인기 품목 변화

아시아 시장은 보편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위생 관련 제품이 필수 제품으로 인식돼 바디용품, 손 세정제 등 개인 위생과 관련된 제품의 성장 가능성이 높게 측정됐다. 또한 피부관리 및 헤어케어 제품 등은 코로나19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 U자형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며 직접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어 그 외 메이크업 제품은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 코로나19의 순기능? 보따리상 감소

나이스리테일베트남 유영국 대표는 KOTRA 호치민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베트남 소비자의 개인위생 용품 매출이 증가했고 오가닉 및 천연 화장품 수요 또한 확대됐다고 밝혔다. 반면, 베트남 내 보따리상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해왔으나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항공물류 통관 비용 등이 높아져 전보다 유통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사점

2020년 팬데믹 사태로 베트남을 비롯한 다수 국가의 소비 시장의 흐름이 전반 둔화된 가운데, 특히 필수품이 아닌 원츠 상품으로 분류되는 화장품 소비 감소는 하릴없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2020~2021년은 베트남 화장품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어 2021년부터는 한국-베트남 FTA를 통해 더 유리한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어 기회요인으로 꼽힌다.





베트남 정수기 시장동향

- 환경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현지 정수기 시장 성장세
- 400여개 이상의 현지 및 외국 브랜드 존재

시장 현황 및 동향

2018년 발표된 글로벌시장조사업체 테크사이리서치(TechSci Research)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베트남 정수기 시장규모는 약 1억 600만 달러를 기록함. 베트남 정수기 시장은 2017년부터 연평균성장률(CAGR) 12% 이상 성장하여 2023년 약 2억 2,100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 이와 같은 성장은 현지 산업화 확대 가속 등으로 소비자들의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 점에 기인함. 정수 시스템의 기술적 발전, 정수기의 온라인 판매, 현지인들의 생활수준 향상, 1인당 GDP 증가 또한 향후 몇 년간의 베트남 정수기 수요를 촉진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힘. 특히, 베트남 내 환경오염 및 불완전한 수도관 관리 시스템 등으로 베트남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경쟁동향 및 주요기업

베트남 정수기 시장에는 400여개가 넘는 현지 및 외국 브랜드가 진출해있음. 그 중 중국 및 한국 등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현지 브랜드가 높은 인지도를 자랑함. 특히, 현지 업체 중 Kangaroo 및 Karofi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편임. 주요 외국 브랜드로는 코웨이(한국), A.O Smith(미국), Geyser(러시아), Sharp(일본), Panasonic(일본) 등이 존재함. 베트남 정수기 시장은 기본 정수기 및 냉수, 온수 사용이 가능한 냉온정수기 비율이 높음. 한편, 물디스펜서는 외부에서 공급된 깨끗한 물 사용, 편리성 및 안전성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

시사점

베트남 정수기 시장은 최근 환경오염 및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인식 강화로 향후 성장 잠재성이 높음. 베트남의 가정용 정수기 사용률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며 물디스펜서의 경우, 일반 가정보다 사무실 내 사용률이 높음. 한편, 현지 소비자 생활수준 향상 및 수질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향후 베트남 정수기 시장 성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베트남에는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다양한 현지 및 외국 브랜드 정수기가 존재함. 특히, 현지 브랜드의 경우 유통 마케팅에 뛰어나 베트남 내 거의 모든 전자상가 및 전자제품 판매처에 입점한 상태임.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제수 생산기준 통과, 현지 지역별 수원에 맞는 다양한 제품군 개발, 시장에 적합한 가격대 측정, 마케팅 활동을 위한 파트너사 선별 등이 중요한 요소로 판단됨.





▶ 호치민시 관광 수익, 코로나19로 큰 타격

호치민시 관광청에 따르면, 2020년 호치민시 총 관광 수익은 코로나19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56조 VND(약 24억 달러) 이상 감소한 약 84조 VND(약 3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올해 호치민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84.8%, 내국인은 약 54.2% 감소함. 한편, 현지 관광청은 '활기찬 호치민시'라는 주제에 맞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 도시 관광 브랜드 재배치를 위한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취할 계획임.

[Saigon Times, 12. 23]

▶ HSBC : 2021 베트남 경기 회복 전망

HSBC는 베트남 경제가 무역, 외국 자본 유입, 내수 소비 활성화로 인해 '21년에도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함. HSBC 베트남 법인장 팀 에반스는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은 수출을 늘리는 확실한 토대라고 전함. 또한 HSBC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10월 베트남이 연 2.6%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베트남은 올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유일한 아세안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베트남은 기록적인 외환 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 충분한 요소이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한 통관 및 행정절차 개선이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데 집중하여야 한다고 조언함.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 되면서 베트남은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 7.02%에서 2-3%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VN Express, 12. 18]

▶ 베트남-영국 자유무역협정(UKVFTA) 서명

영국과 베트남은 12월 11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UKVFTA)협상에 서명함. 양국의 2019년 무역액은 66억달러로 영국은 유럽역내에서 독일과 네덜란드에 이은 베트남의 세번째 교역국임.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UKVFTA를 통해 투자협력 및 기술이전을 확대하고 국방, 안보, 문화, 교육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전함.

[Vietnam Briefing, 12. 16]

▶ 베트남중앙은행(SBV) 美재무부의 베트남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 공식 성명서 발표

12월 16일 미국 재무부는 미국과의 교역규모가 400억불 이상인 20개 주요 교역국의 '19년 하반기~'20년 상반기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평가 보고서를 발표, 환율조작국 지정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및 발표함. 이에 대해 17일 오전 베트남 중앙은행은 최근 몇 년간 베트남에서 환율통제를 한 이유는 불공정 무역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함이 아닌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거시경제 안정을 위함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함. 또한 베트남 중앙은행은 대미 무역 흑자 및 경상 수지 흑자는 환율조작의 결과가 아닌 베트남 경제의 특수한 요인의 결과이며 이러한 움직임으로 국가 외환 보유고를 강화하고 국가재정 및 통화 안보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힘.

[VN Express, 12. 17]



▶ JCER : 베트남, 2023년 중상위 소득 국가 될 것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는 베트남이 2023년 중상위 소득 국가가 되고 2035년 GDP가 대만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함. JCER은 최근 아시아 경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 "아시아의 코로나19 : 어떤 국가가 부상중인가?" 에서 위와 같이 밝힘. JCER은 표준 시나리오에서 중기적으로 코로나19는 경제 구조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는 일시적인 사건이라 가정하며 2020년에는 중국, 베트남, 대만이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베트남은 수출 덕분에 2035년 약 6%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5년 대만을 넘어 인도네시아 다음의 경제국으로 발돋움 할 것이라 전망함. JCER은 2023년 베트남은 중상위 소득을 달성하고 2035년 1인당 국민 소득은 11,000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DTI News, 12. 15]

▶ 코로나19로 인한 가게 임대료 하락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소매점의 매출이 급감함. 이에 따라 호치민 1군 상가임대료가 전년동기에 비해 15-19% 하락함. 식당, 커피숍 등 식·음료 업종이 올 2·3분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임대 수요가 감소했음을 의미함. 쇼핑몰이 모여있는 1군의 경우 연말과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은 쇼핑 성수기를 기대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예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자 일부 소유주들은 임대료를 하향 조정함.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유행과 해외 입국자 수 급감 추세와 더불어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로 이동하면서 기업들이 오프라인 매장 판매 대신 온라인 판매에 더 주력하게 되었다고 전함.

[VN Express, 12.14]

▶ 하노이에 한-베트남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VITASK)센터 개소

지난 12월 11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 대한민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VITASK)센터' 출범식이 개최됨. 이 행사는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관함. 이 행사에서 켄 투안 안 산업무역부 장관은 지원산업이 정부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하며 지원산업 개발에 관한 정부 결의안 115호에서 정한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 역량과 수준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이 항상 베트남과 동행하고 VITASK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양국의 협력에 있어 좋은 성과를 창출할 것 이라고 전함.

[Nhan Dan, 12. 11]



▶ ADB, 베트남 2020년 GDP 성장을 전망치 2.3%로 수정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0년 베트남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전망치를 '20년 9월 추정치인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함. ADB가 12월 10일 발표한 아시아개발전망 2020에 따르면, 이 성장률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이며 2021년에는 6.1%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이와 같은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 조정은 공공투자 확대, 투자 증대, 내수회복, 무역확대 및 중국 경제 회복에 따른 동반 성장 등을 주 원인으로 꼽았음. 베트남 경제 성장률은 '20년 2분기 0.4%에서 3분기 2.6%로 증가해 1~9월 평균 성장률이 2.1%로 증가함. 한편, 중부 지역의 홍수 피해 등으로 베트남 인플레이션 예측은 최대 3.5%까지 수정됨.

[Saigon Times, 12.10]

▶ NANOGEN사의 코로나19백신 NANOACOVAX, 12월 17일 일반임상시험 1기 돌입

베트남 국립 의학 연구원과 제약사 NANOGEN은 이들이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 NANOACOVAX의 첫 일반인 임상시험에 돌입한다고 발표. NANOGEN은 18세에서 50세의 신체 건강한 지원자 중 총 60명의 피험자를 선발함. 피험자는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지며 이 중 1그룹은 NANOACOVAX 백신 25MCG, 2그룹은 50MCG, 3그룹은 75MCG를 28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근육 피하주사로 투여 받을 예정임.

NANOGEN관계자는 임상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21년 말 또는 2022년 초에 베트남에서 백신을 생산하여 국내에 보급할 것이라 전함. NANOGEN이 개발중인 NANOACOVAX 외에도 베트남에서는 보건부 산하 국영 백신 연구소와 제약회사인 VABIOTECH에서 각각 코로나19백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들은 2021년 2월과 3월 일반인 임상시험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짐. 베트남 보건부 관계자는 백신 저온 유통 및 보관부문에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한 보관 및 유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전함.

[Tuoi Tre, 12. 10]

▶ 이마트, 베트남 사업 철수 가능성 제기

한 한국 언론은 이마트가 베트남 사업 철수를 고려중이라 보도함. 이마트는 2015년 12월 호치민시 고밥군에 1호점을 오픈한 바 있음. 개점 5년이 지났지만 이마트는 여전히 1개의 점포만 가지고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추진하던 베트남 2호점 오픈 공사가 골조를 올린 이후에도 현지 당국의 규제와 인허가 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멈추며 사업 확대가 불가해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음. 특히 과거 중국에 진출했을 당시 사드 등의 여파로 1500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본 끝에 10 년만에 철수한 경험이 이번 이마트 매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짐.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베트남 1호점인 고밥점을 매각하기로 결정, 삼정 KPMG를 자문사로 선정하고 매수자를 물색중이며 현지 대형 업체나 글로벌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매수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이마트 관계자는 베트남 사업 철수를 부인하고 전략적 제휴나 사업적 제휴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함. 한편, 이마트는 아시아에서 저성장을 경험하면서 미국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있음. 이마트의 해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는데 이는 현재 해외 매출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자회사 GOOD FOOD HOLDINGS의 영향이 가장 큼.

[Vietnam Insider, 12.10]



▶ 호치민시, 물류 산업 개발에 41억 3,000만달러 예산 승인

호치민시는 향후 5년간 물류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4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승인함. 호치민시는 또한 수로와 철도에 의한 상품 수송을 통해 내륙 컨테이너 창고 및 물류센터 건설을 촉진하고 물류센터로의 복합운송 연결을 강화할 예정. 이 프로젝트를 통해 2군, 9군, 뚜득 군, 빈간 군, 냐베 현 혹은 현 등 7개 지역을 물류 센터로 개발할 계획임. 베트남 물류사업협회는 베트남의 물류비용은 운송비60%, 취급활동비 21% 입고비 12%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힘. 또한 도로의 수송 점유율이 77%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됨.

[VN Express, 12. 07]

▶ 기획투자부, 11 월 산업생산지수 전월 대비 0.5%, 전년 동기 9.2% 상승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11월 산업생산지수(IIP)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기 대비 9.2% 상승함. 제조업이 11.9%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 5.3%, 발전 및 유통 4%를 기록했으며 채광, 채석업은 6.2% 감소함. 제조업은 4.7% 증가한 반면 채광, 채석업은 11개월 동안 7.1% 급감함. 11월 1일 기준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1.1% 증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함.

[Nhan Dan, 12.07]

▶ 아세안 통관 간소화 시스템 (ACTS) 공식 출범

11월 30일,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6개국 기업이 전자통관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게 함으로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세안 통관 간소화 시스템 (ACTS)가 공식적으로 실시됨. 그 동안 ACTS는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서 파일럿으로 운영된 바 있음. 이 시스템은 곧 미얀마로 확장되며 수요에 따라 향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으로 확장 될 가능성이 있음. 10월 23일-24일 태국을 출발하여 말레이시아를 경유하고 싱가포르로 향하는 운송 트럭이 성공적으로 ACTS를 통해 간이 통관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운영됨. 물품을 운송업체는 반복적으로 각 국경에서 세관신고를 하거나 차량을 변경할 필요없이 여러 국가의 상품 운송을 일원화 하여 단일 세관신고를 함으로서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됨. 아세안 사무총장은 아세안 통관 간소화 시스템으로 인해 ASEAN 의 무역 및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 전함.

[Nhan Dan, 12. 02]

▶ 베트남 총리,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확산방지위해 국제선 항공기 운항 일시중단 지시

11월 30일, 호치민에서 89일만에 지역사회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푸크 총리는 12월1일 부터 국제선 항공기 입국을 잠정 중단 하라고 지시함. 단 베트남 국민을 송환하기 위한 특별기는 운항이 가능하며, 모든 입국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4일 강제 격리를 해야함. 호치민 보건국은 11월 30일 발생한 1342번 확진자 관련, 1347, 1348, 1349번 등 3건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힘. 호치민시 보건국장인 응우옌 탄 빈은 1342번 확진자가 베트남의 자체 격리 규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베트남 항공의 규정도 위반했다고 전함. 이 확진자는 격리 기간 동안 타인과 접촉이 불가한 규정을 어기고 격리 중이던 직장 동료, 1325번 확진자를 접촉함. 결과적으로 1342번은 11월 26 일 확진 판정을 받은 1325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밝혀짐. 이에 따라 푸크 총리는 격리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엄중 처벌 할 것을 지시함.

[VN Express, 12. 01]



▶ 베트남 호텔업계, 올 4분기에도 회복이 어려울 전망

하노이, 호치민 뿐 아니라 다낭, 나짱, 붕따우, 께년, 푸껩 등 베트남의 주요 도시와 관광도시에서는 매일 수십 개의 호텔이 매물로 나오는 중임. 지난 7월에 발생했던 다낭발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인해 베트남의 관광업계는 다시 큰 타격을 입음. 사빌스의 호텔 분야 보고서는 올 상반기 하노이와 호치민의 호텔 수익이 2019년 하반기 대비 각각 56%, 64% 감소 했으며, 올 상반기 베트남 전역의 평균 호텔 수익은 2019년 하반기 대비 55% 하락했다고 보고함.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2020년 4분기 호텔산업의 경영난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함. 일부 호텔 소유주들은 파산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호텔 매각을 시도하나, 관광 시장이 지속적인 타격을 입는 와중에 위험을 감수하고 호텔을 구매 할 투자자도 거의 없기 때문에 호텔 매각 역시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짐.

[Vietnam News, 12. 01]

▶ 베트남, 1~11월 무역흑자 기록

'20년 1~11월, 베트남은 미국 및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로 약 201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함. 현지 통계청에 따르면, 수출 및 수입은 각각 2,546억 달러(5.4% 증가), 2,345억 달러(1.5% 증가)를 기록함. 중장비 및 전자제품 관련 수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농산물 수출은 다소 줄어듦. 한편, '19년 베트남은 무역흑자 9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4년 연속 무역흑자를 달성함.

[VN Express, 11. 30]

▶ 로이터 : 폭스콘, 일부 아이패드와 맥북 생산라인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 중

로이터 통신은 폭스콘이 중국에서 일부 아이패드와 맥북 생산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 중이라고 보도함. 폭스콘의 베트남 아이패드와 맥북 생산 라인인 2021년부터 가동될 예정으로 알려짐. 폭스콘은 이번주 초 2억 7,000만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한 바 있음. 폭스콘 측에서 직접적으로 중국 생산라인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업계 관련 전문가는 이 투자비용이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것이라 추정함. PHONEARENA.COM은 일부 에어팟이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중에는 3세대 에어팟이 출시될 것으로 전함. ENGADGET.COM은 폭스콘이 애플 제품의 생산 기지를 부분적으로 베트남으로 이동함에 따라 무역 전쟁이 악화 될 경우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생산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힘.

[Vietnamnet, 11. 29]



(입찰정보)

1. 프로젝트 세부정보

발주처	○ 기관명: BRG ○ 웹사이트: https://www.brggroup.vn/ ○ 연락처: +84966644956
프로젝트	○ 프로젝트명: 하노이 북부 스마트 시티 ○ 현장위치: 하노이 북부  ○ 규모: 42억 달러 ○ 프로젝트 재원: 발주처 펀딩 ○ 프로젝트 단계: 1단계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선정단계 - 1단계 : 72ha의 건설 및 토목, 투자규모 10억 달러 ○ PMC 입찰예정일: '20.12월 ~ 미정 (1단계) ○ 세부내용: -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과 하노이시 중심부의 중간에 위치한 닛탄다리 북쪽에 위치. - 베트남 BRG 그룹과 일본 스미토모 그룹과의 합작법인 프로젝트 - 총 272ha 규모이며 프로젝트는 5단계로 구성 - 2028년까지 약 2만 5천명의 주거 지역 건설 예정

발주처 담당자 정보 필요시 별도 문의 (jinlim@kotra.or.kr)



베트남 현지인 직원에 대한 의무보험료 및 개인소득세 납부

법무법인 아세안 최지웅 변호사

jchoi@alfcounsel.com

베트남 내에는 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많은 유형의 기업들이 존재한다. 기업들의 수가 증가한 만큼 그 중에 베트남 관련 법규를 위반 적발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여러 유형의 노동법 관련 사건들을 접하면서 회사와 근로자간 발생하는 사건 중에서 특히 회사가 베트남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각서 또는 약속서를 득한 후, 근무기간동안 발생하는 의무보험료(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및 개인소득세를 전적으로 현지인 직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으며, 동시에 한국계 기업의 노동법 이해 결여를 악용하여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기업 문화에 밝은 일부 관리자급 현지인 직원의 의무보험료 및 개인소득세 명목 수취 후 자진 납부 미이행에 따른 현지법상 횡령죄 성립 여부도 종종 다투게 된다.

예컨대, 베트남에 진출하여 제조법인을 운영 중인 B모업체의 경우, 한국어에 능통한 베트남 현지인 직원에 대하여 현금으로 확정액 급여를 수 년간 매월 지급해오고 있었는 바, 이는 해당 업체와 현지인 직원간의 별도 서면 합의를 통하여 현지인 직원은 회사로부터 수령한 총 급여 중에서 베트남 유관 당국에 자진 납부하되, 이와 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현지인 직원이 지는 것을 취지로 하는 형태의 근로 관계가 지속되어 온 바 있는 바 있다.

베트남 사회보험법 제2.3조에 의거하면 본 의무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사용자에는 베트남 내 운영 중인 외국단체, 외국기관, 국제단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베트남 진출 한국업체를 포함한 기타 광범위한 외국단체를 전부 포함하여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베트남 내 한국업체와 현지인 근로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회보험 또한 기타 베트남 내 일반 내국법인 및 외국투자법인과 같은 기준으로 법적용이 가능한 바, 위와 같은 B모업체의 경우에도 가사 현금 지급방식으로 해당 직원에게 모든 의무보험료 및 개인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용자의 지위로 급여(기본급)의 17.5% (사회보험법 제86.1조), 근로자(현지인 직원)의 지위로 급여의 8% (사회보험법 제85.1조) 납부 의무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현지인 직원의 근로계약이 만 3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관계는 베트남 건강보험 및 실업보험 가입 및 납부의무가 발생 (건강보험법 제12.1조, 채용법 제43조)되며, 해당 업체는 사용자의 지위로 급여의 각 3% 및 1% 를 건강보험료 및 실업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현지인 직원은 근로자의 지위로 각 1.5% 및 1% 를 건강보험료 및 실업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위 B모업체는 베트남 관련법에 의거하여, 현지인 직원의 급여액의 총 21.5% 에 해당되는 금액을 의무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현지인 직원은 급여액의 총 10.5% 를 동 사유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다.

즉, B모업체는 매월 해당 현지인 직원에 지급되는 급여 중 일부를 상기 관련 법률상 규정된 사용자 및 근로자 비용에 부합되는 액수로 원천징수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의 의무보험료 부담분을 직접 베트남 유관 사회보험당국에 납부할 의무 (사회보험법 제21.2조, 건강보험법 제15.1조, 채용법 제44조) 가 있다고 할 것이며, 개인소득세의 경우(사용자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 미이행 시 근로자에 2차적 신고책임을 부과)와 달리 반드시 사용자가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간과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사안 적발 시 유관 당국으로부터 처벌 내지 상당한 불이익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있다.

의무보험료 납부 이외에도 베트남 노동조합법 제26.2조 및 시행령 191/2013/ND-CP 제4조에 의거하여 베트남 내 모든 사용자는 노동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된다. 노동조합비는 사내 노조유무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용자에게 부과되며, 노동조합비는 근로자의 급여액(사회보험료 산출 기준 급여액)의 총 2% 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는 사용자가 의무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일 시점에 반드시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규율 (동 시행령 제6조) 되고 있는 점을 주지가 요망된다.

나아가, 베트남 개인소득세법 제2.2조에 의거하여 베트남 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에 따라서 수령하는 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무 의무가 발생된다. 개인소득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급여 지급당사자(사용자)는 근로자의 개인소득세를 유관당국에 직접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바, B모업체 또한 이와 같은 현지인 직원의 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세액을 직접 원천징수 하에 납부하는 것이 현행 베트남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참조할 점은 베트남 시행령 111/2013/TT-BTC 제26조에 의거하여, 회사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반드시 현지인 직원의 개인소득세 납부액을 매월 또는 분기별 원천징수 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다 수의 사용자측은 매 분기별 근로자들의 개인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규에도 불구하고, 동 시행령 제26.2조 (a)항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 즉, 현지인 직원은 수령 급여를 직접 유관 베트남 당국에 신고 납부할 의무가 발생되는 바, 법규를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1차적으로 개인소득세분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 미이행에 따른 페널티 등 베트남 당국의 사용자에게 대한 처벌 개연성 또한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B모업체의 현지인 직원이 그동안 회사로부터 자진 납부를 전제로 수령해온 급여 중 일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지가 이슈로 남는다. 베트남 형법 제353조에 의거하여 베트남 내 횡령죄는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산을 자신의 관리 하에 획득하는 행위’로 규율되고 있는 바, 해당 사안에서와 같이 현지인 직원이 수령한 급여의 일부를 개인소득세 및 의무보험료 베트남 유관 당국에 자진 납부하지 아니한 점을 사유만으로는 베트남 횡령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현지 실정이다. 베트남 내 기업을 운영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반드시 베트남 관련 법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 하에 현지인 직원과의 근로계약 및 기타 합의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끝>



베트남 중부 유망 투자지역 안내 - 빈푹성

□ 빈푹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 면적: 1,236㎢ ▪ 인구: 1,154,836명('19년) ▪ 도시거주 비율: 30%
지정학적 위치	▪ 빈푹성은 베트남 북부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4개 성/도시와 인접함. 북쪽으로는 Thai Nguyen(타이 응우엔)성 및 Tuyen Quang(뚜옌 꾸앙)성, 동쪽과 남쪽으로는 Ha Noi(하노이), 서쪽으로는 Phu Tho(푸터)성과 접해 있음. ▪ 빈푹 성은 3개 경제 지역에 모두 속함: (1)하노이 수도권 (2) 북부 핵심 경제 지역 (3)홍강 델타 지역
접근성	▪ 빈푹성 중심부는 노이바이 국제공항과 25km 떨어져 있음.
GRDP 성장률 / 1인당 GDP	▪ 전년대비 8.1% 성장('19년) ▪ 성 1인당 GDP: USD 4,560/연, 전년 대비 13.7% 성장('19년)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	▪ 총수출액: USD 25.6억 달러 / 총수입액: USD 29.5억 달러 ('19년) ▪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13.3%), 서비스업(6.64%), 농수산업(-2.77%)
산업구조	▪ 공업/건설업: 62.41%, 서비스업: 30.22%, 농수산업: 7.37%
노무여건	▪ 성내 노동가능 인구: 55%('19년) ▪ 노동 가능인구 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50%('19년) ▪ 직업교육 이수자 중 자격증 보유비율: 72.1%('19년)
최저임금('20년)	▪ Vinh Yen시, Phuc Yen시, Binh Xuyen현, Yen Lac현: VND 3,920,000=USD168(2급지) ▪ Vinh Tuong, Tam Dao, Tam Duong, Lap Thach, Song Lo현: VND 3,430,000=USD147 (3급지)
외국인투자 ('20.9월 기준)	▪ 빈푹성 투자 총 외국인투자는 402개 프로젝트, USD 57.7억 달러 ▪ (한국) 212개 프로젝트 총 USD 23.7억 달러로 빈푹성에 투자하는 국가(19개) 중 1위를 차지함

□ 투자환경

○ 뛰어난 접근성 및 물류인프라

- (도로) 빈푹성에는 2, 2A, 2B, 2C, 하노이-라오까이 고속도로 등 5개의 국도 및 18개의 지방 도로가 있음.
- (철도) 빈푹성을 지르는 1개의 국영철도 라인이 있음.
- (수로) 북부에서 가장 큰 로강(Song Lo)과 홍강(Song Hong)이 빈푹성을 가로지름.
또한 빈푹성 중심부는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25km, 하이퐁 항구에서 150km, 까이란 항구에서 165km 떨어져 있음



- 광물자원:

+ 연료 광물: 무연탄 양 약 1,000톤이 Dao Tru(Tam Dao) 지역에 매장되어 있음.

갈탄은 Bach Luu, Dong Thinh(Song Lo)지역, 이탄은 Van Quan(Lap Thach)지역에 매장.

+ 금속 광물: 중정석, 구리, 금, 주석, 철 등. 주로 팜다오 단층 지역에서 발견되며 Lap Thach현, Tam Duong현, Binh Xuyen현 지역에 흩어져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량의 파악됨

+ 비금속 광물: 카올린(고령토) 광물이 주로 Tam Duong현, Vinh Yen시, Lap Thach현에 집중되어있음.

+ 건축 자재: 점토 벽돌, 언덕 점토, 회색 점토, 갈색 점토, 모래 및 자갈, 석재(granit, riolite), 라테라이트.

- 토양 : 두 가지 주요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음: 충적토 및 구릉지 토양

- 수자원: 두 큰강(Song Hong, Song Lo)과 작은 강(Pho Day, Phan, Ca Lo) 및 저수지 시스템 (Dai Lai, Xa Huong, Van Truc, Dam Vac) 덕분에 수자원은 상당히 풍부함. 지하수의 매장량은 크지 않지만 현재 빈옌시, 푸옌시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일부 농촌 지역의 우물에서 채취하고 있음

○ 인센티브 정책 지원: 빈푹성에는 사회경제 낙후지역이 없으며, 경제특구도 존재하지 않음. 타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기의 인센티브 규정에 따라 적용함

구분	투자지역, 분야	법인세/수입세/토지세	감면, 면제 기간
일반 공단	신규 프로젝트 시행 시	10년간 17%	최초 2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
공통	고정자산 투자용 설비, 기계수입 시	수입세 면제	
	수출용 재화 생산용 원부자재 수입 시	수입세 면제	5년 간
	일반공단, 경제특구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투자할 시	신용 대출 우대 적용	

○ 빈푹성 투자 지원 정책: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조치들에 대한 빈푹성 인민위원회의 2016년 12월 12일자 결의안 57/2016/NQ-HDND호에 따르면:

1. 토지에 관한 지원
2. 계획에 관한 지원(빈푹성 인민위원회의 2017년 7월 28일자 결정 23/2017/QD-UBND호에 따름)
3. 산업 단지 내외 기술 인프라 구축 지원
4. 고급 인력 교육 및 유치 지원(빈푹성 인민위원회의 2017년 10월 6 일자 결정 38/2017/QD-UBND호에 따름)



5. 지원 산업의 기업 지원(빈푹성 인민위원회 2017년 10월 13일자 결정 39/2017/QD-UBND호에 따름)
6. 투자 우대 분야의 프로젝트를 위해 지방 대중매체 광고비 지원(빈푹성 인민위원회의 2017년 11월 1일자 결정 42/2017/QD-UBND호에 따름)
7. 투자 우대 분야의 직접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비용 지원(빈푹성 인민위원회의 2017년 8월 28일자 결정 29/2017/QD-UBND호에 따름)
8. 투자 우대 분야의 직접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환경영향 평가보고서 작성 비용 지원(빈푹성 인민위원회의 2017년 12월 22일자 결정 53/2017/QD-UBND호에 따름)

□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 2020년 9월까지 빈푹성 외국 투자는 총 402개 프로젝트에 걸쳐 57.7억 달러를 기록했음. 주요 투자 분야는 자동차, 오토바이, 전기 및 전자, 건축 자재임. 아래표는 빈푹성에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 19개 국가중 상위 10개국의 투자액 순위임

순번	국가 및 영토	프로젝트	투자 금액 (USD)
1	한국	212	2,370,092,246
2	일본	48	1,203,860,786
3	대만	38	953,462,871
4	중국	51	409,574,395
5	싱가포르	12	317,205,829
6	태국	13	197,478,919
7	이탈리아	2	90,000,000
8	사모아	6	79,876,572
9	세이셸	4	34,200,000
10	네덜란드	2	33,741,470

- 다음과 같은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이 빈푹성에서 성공적으로 투자하고있음:

Daewoo Bus, Patron, Heasung, Inteflex, Bangjoo, Cammsys (한국),
Toyota, Honda, Sumitomo (일본), Prime Group (태국), Piaggio (이탈리아),
De Heus (네덜란드).



○ 한국계 투자

- 한국기업의 투자는 현재 총 212개 프로젝트에 걸쳐 USD 23.7억 달러가 투자등록 되어있으며, 빈푹성에 투자하는 19개의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빈푹성 내 10대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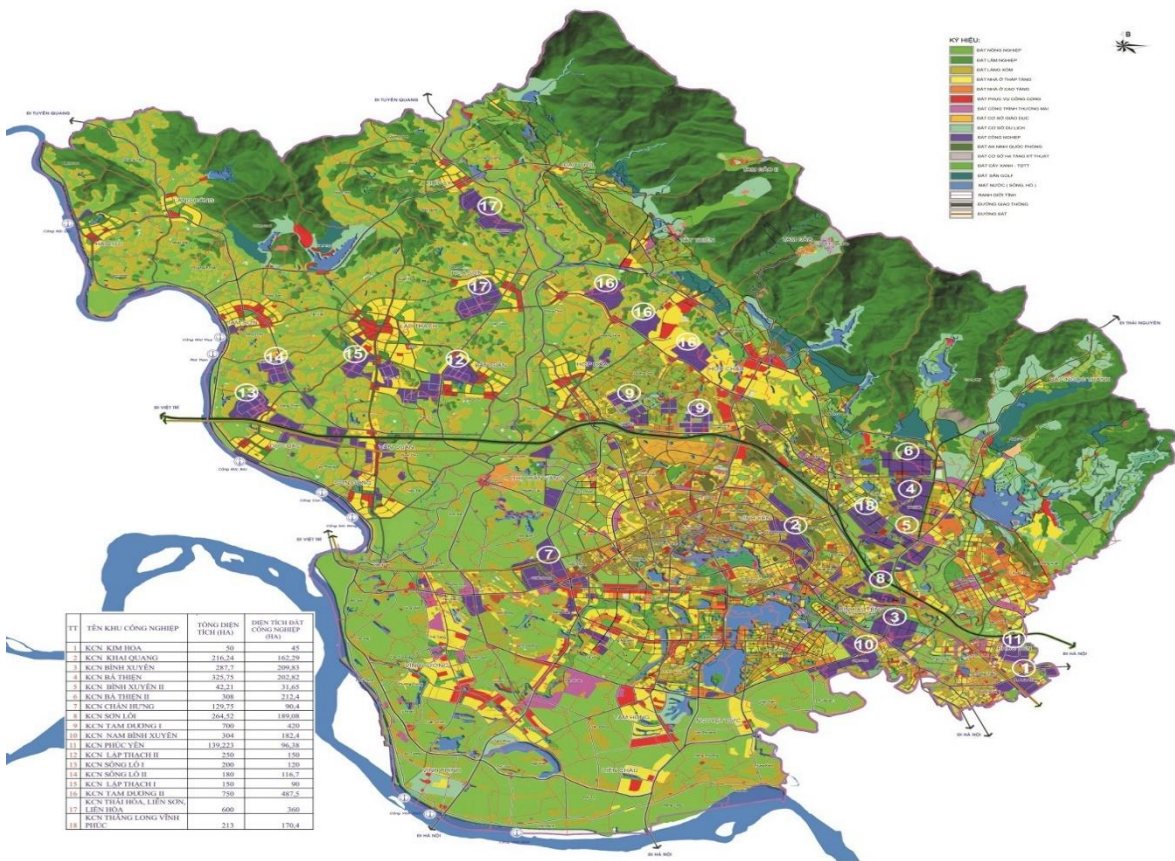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액 (달러)
1	(주)Compal VN	노트북, 액정 모니터, 액정 TV 및 관련 장치	대만	500,000,000
2	(주)Honda Viet Nam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조 및 무역 프로젝트	일본	410,000,000
3	(주)Partron Vina	휴대폰용 카메라 및 렌즈 제조	한국	270,000,000
4	(주)YPE Vina	전자 회로 기판(PCB) 및 표면 접착 회로 기판(SMT) 제조 및 가공, 공장 임대 전자 회로 기판 (PCB) 및 표면 접착 회로 기판(SMT) 확인	한국	200,000,000
5	(주)Haesung Vina	휴대폰용 카메라 및 렌즈 제조	한국	165,000,000
6	(주)Toyota	모든 종류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조립 및 제조, 보증 서비스 제공, 베트남에서 완성차 수리 및 수입 프로젝트	일본	163,000,000
7	(주)CDL Precision VN	기능성 소비자 전자 장비 필름 (막) 보호; 줄자; 스티로폼; 전자파 방해 기 (EMI); 열가소성 PC, PET; 메쉬 메쉬; 무선 충전	한국	116,000,000
8	(주)Solum Vina	텔레비전, 휴대폰, 모니터, 노트북, A/V (오디오/비디오) 및 기타 소비자 전자 장치용 충전기 (ADT) 제조 및 처리	한국	102,000,000
9	(주)Power Logics Vina	카메라 모듈 제조; 전면 부 카메라, 감시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액추에이터	한국	100,000,000
10	(주)브레이크 Nissin Vina	자동차 및 오토바이용 브레이크 시스템 생산	일본	84,000,000



□ 공단 현황

○ 주요 공단 정보

순번	공단명	설립 년도	주요정보	투자자
1	Khai Quang	2003년	· 총면적: 216.24ha · 인프라 임대료: USD 68/m²/프로젝트 · 투자 우대 분야: 정밀 기계 장비(전자, 냉동, 자동차 및 오토바이용 예비 부품) · 입주율: 93.80%	Vinh Phuc Infrastructure Development JSC
2	Binh Xuyen	2007년	· 총면적: 286.98ha · 인프라 임대료: USD 65/m²/프로젝트 · 투자 우대 분야: 자동차 및 오토바이 부품, 전기 장비, 화학 제품, 건축 자재 · 입주율: 75.20%	An Thinh Vinh Phuc Construction Investment Co., Ltd
3	Kim Hoa	1998년	· 총면적: 50ha · 투자 우대 분야: 자동차 및 오토바이 부품 제조 및 조립 · 입주율: 100%	IDICO Corporation (Viet Nam Urban And Industrial Zone Development Investment Corporation)
4	Ba Thien	2007년	· 총면적: 325.75ha · 입주율: 74.40%	Housing Development and Trading JSC
5	Binh Xuyen II (단계1)	2008년	· 총면적: 42.21ha · 인프라 임대료: USD 55/m²/프로젝트 · 투자 우대 분야: 휴대폰, 전자 부품, 스크린액정, 오디오 장비, 반도체 제조, 소프트웨어 제품 · 입주율: 100%	Fu Chuan Co., Ltd
6	Ba Thien II	2009년	· 총면적: 308.83ha · 인프라 임대료: USD 70/m²/프로젝트 · 투자 우대 분야: 경공업, 첨단 기술 산업, 통신 산업, 전자 부품, 물류 및 기타 지원 산업 · 입주율: 68.10%	Vina CPK Co., Ltd
7	Tam Duong II - 구역A	2014년	· 총면적: 135.17ha · 투자 우대 분야: 정밀 기계 제조, 전기 장비, 전자, 냉동, 농업 기계 제조, 금속·비금속 제품용 금형 제조 · 입주율: 33.40%	VITTO-VP Co., Ltd
8	Thang Long	2015년	· 총면적: 213ha · 인프라 임대료: USD 90-100/m²/프로젝트 · 입주율: 74.60%	Thang Long Industrial Park Corporation



□ 투자 유망분야

빈폭성은 하이테크, 친환경, 낮은 토지 자원 사용 및 노동 집약적이지 않은 프로젝트에 투자를 우선시함. 투자 우대 분야는 다음과 같음:

1. 산업단지/클러스터 인프라 개발
2. 오토바이, 자동차 기계 및 지원 산업
3. 전기, 전자 시설 및 지원 산업
4. 은행업과 재무 서비스업
5. 의료, 교육
6. 여행 서비스 및 무역
7. 도시개발 사업
8. 하이테크 농업 및 농업 제품 생산

□ 빈폭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연구, 투자 촉진 및 기업 지원 센터	Ms. Tran Huyen Trang (센터장)	Tel: +84-211-6256-616 Email: investvinhphuc@gmail.com Website: investvinhphuc.vn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01. 01~2020. 12. 20 기준 누계		2020. 01. 01 ~ 12. 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 국	8,983	70,645	609	1,206	3,949
일 본	4,632	60,258	272	786	2,368
싱가포르	2,629	56,551	248	6,157	8,994
대 만	2,792	33,707	131	1,506	2,058
버진아일랜드(영)	869	22,255	30	311	903
홍 콩	1,944	25,662	211	1,271	2,000
중 국	3,123	18,460	342	1,582	2,459
말레이시아	644	12,901	33	61	195
태 국	603	12,874	40	292	1,785
네덜란드	374	10,418	36	294	897
미 국	1,072	9,437	95	181	360
전체 합계	33,070	384,044	2,522	14,646	28,530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2020. 12. 20 기준 누계		2020. 01. 01 ~ 12. 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132	226,490	800	7,191	13,601
2	부동산경영	941	60,057	70	987	4,185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52	28,922	20	5,081	5,143
4	호텔, 외식서비스	891	12,507	57	106	341
5	건설	1,755	10,684	79	237	560
6	도소매, 유지보수	5,181	8,484	704	431	1,641
7	물류운수	877	5,341	59	169	612
8	채광	108	4,898	1	0.41	6
9	교육, 양성	581	4,411	54	19	108
10	정보통신	2,323	3,967	206	53	271
11	농, 임, 수산	503	3,701	12	103	210
12	예술 오락	138	3,392	5	3	5
13	기술과학전문	3,539	3,691	376	169	1,347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0	2,923	4	64	88
15	의료와 사회복지	155	2,001	9	4	33
16	행정, 지원 서비스	487	963	56	20	40
17	기타서비스	144	848			
18	금융, 은행, 보험	76	753	6	0.29	287
19	기타산업					
합계		33,070	384,044	2,523	14,646	28,530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17	2018	2019	2020.112
수출	2,137.70	2,447.20	2,634.50	2,814.7
수입	2,111.00	2,375.10	2,535.00	2,624.0
무역수지	26.7	72.1	99.5	191

자료원: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목명	2017	2018	2019	2020.12
각종 전화기 및 부품	45,085	50,003	51,827	50,880
섬유/직물제품	25,928	30,447	32,571	29,478
전기전자제품/부품	25,882	29,446	35,591	44,668
기계/플랜트 및 부품	12,785	16,528	18,304	27,042
신발류	14,637	16,297	18,299	16,551
수산물	8,353	8,831	8,572	8,384
목제품	7,604	8,855	10,526	12,323
수송수단 및 부품	6,967	7,985	8,500	9,058
철강제품	3,100	4,558	4,160	3,035
채소	3,517	3,822	3,764	3,259
기타	59,912	67,951	71,337	76,793
합계	215,118	243,483	264,189	281,471

자료원: General Statistics Office / 2018년 순위기준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목명	2017	2018	2019	2020.12
전자제품 및 컴퓨터	33,638	42,501	51,550	63,973
기계/플랜트 및 부품	37,501	33,715	36,640	37,353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6,182	16,010	14,666	16,565
의류(원단)	11,446	12,914	13,329	11,802
철강제품	9,100	9,896	9,485	4,526
플라스틱 원료	7,355	9,097	9,012	8,323
유류제품	7,006	7,614	1,047	1,056
기타 금속	5,445	7,317	6,407	6,080
플라스틱 제품	5,408	5,906	6,526	7,238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5,464	5,741	5,886	5,316
기타	72,551	86,801	98.96	100,175
합계	213,215	236,687	253,070	262,407

자료원: General Statistics Office / 2018년 순위기준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6	2017	2018	2019	2020.11
1	미 국	38,464	41,608	47,526	61,347	69,379
2	중 국	21,970	35,463	41,268	41,414	43,233
3	일 본	14,677	16,841	18,851	20,413	17,482
4	한 국	11,419	14,823	18,205	19,720	17,437
5	홍 콩	6,091	7,583	7,955	7,156	9,285
6	네덜란드	6,014	7,106	7,076	6,881	6,267
7	독 일	5,959	6,364	6,869	6,555	6,050
8	인 도	2,688	3,756	6,542	6,674	4,762
9	영 국	4,899	5,424	5,776	5,758	4,534
10	태 국	3,693	4,786	5,494	5,272	4,503
	기 타	60,068	77,115	79,161	82,999	72,039
	합 계	175,942	213,770	244,723	264,189	254,971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 2018년 순위 기준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6	2017	2018	2019	2020.11
1	중 국	49,930	58,229	65,438	75,452	74,667
2	한 국	32,034	46,734	47,497	46,935	41,798
3	일 본	15,034	16,592	19,011	19,526	18,418
4	대 만	11,221	12,707	13,228	15,173	15,084
5	미 국	8,708	9,203	12,753	14,365	12,453
6	태 국	8,796	10,495	12,023	11,656	9,716
7	말레이시아	5,114	5,860	7,450	7,291	5,968
8	인도네시아	2,971	3,640	4,918	5,703	4,787
9	싱가포르	4,709	5,301	4,524	4,091	3,327
10	인 도	2,746	3,940	4,147	4,538	4,061
	기 타	31,999	38,395	46,523	48,341	44,628
	합 계	173,262	211,096	237,512	253,071	234,907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 2018년 순위 기준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11
수출	32,651(17.6)	47,749(46.3)	48,629(1.8)	48,178(-0.9)	43,272(-2.3)
수입	12,495(27.4)	16,176(29.5)	19,632(21.4)	21,071(7.3)	18,876(-3.5)
무역수지	20,156	31,573	28,997	27,107	24,396

자료원: KITA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6	2017	2018	2019	2020.11
반도체	4,574(59.3)	9,235(101.9)	10,939(18.5)	10,730(-1.9)	10,507(4.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512(98.4)	7,367(193.0)	8,909(20.9)	7,970(-10.5)	8,205(13.6)
무선통신기기	5,192(22.2)	3,286(-36.7)	2,632(-19.9)	2,933(11.4)	3,163(15.6)
기구부품	1,722(39.6)	2,612(57.7)	2,332(-10.8)	2,230(-4.4)	2,039(-0.6)
석유제품	1,088(231.2)	1,978(81.0)	1,980(-0.4)	2,194(11.0)	1,058(-47.2)
합성수지	1,203(8.4)	1,442(19.8)	1,659(15.1)	1,624(-2.1)	1,431(-4.3)
플라스틱 제품	864(16.9)	1,152(54.9)	1,205(4.6)	1,210(0.4)	1,013(-9.2)
편직물	1,077(10.3)	1,118(3.8)	1,106(-1.0)	996(-10.0)	752(-17.1)
철강판	820(-2.3)	985(20.1)	1,049(6.5)	1,158(10.4)	957(-9.8)
광학기기	437(56.4)	794(81.7)	944(18.9)	946(0.2)	868(-1.2)
기타	12,676	18,808	15,874	16,187	13,279
합계	32,651(17.6)	47,749(46.3)	48,629	48,178(-0.9)	43,272(-2.3)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2018년 순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6	2017	2018	2019	2020.11
무선통신기기	3,145(113.9)	3,964(26.0)	4,835(21.4)	5,691(17.6)	4,659(-13.3)
의류	2,426(9.2)	2,874(17.4)	3,570(24.2)	3,646(2.1)	2,943(-14.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56(-57.4)	604(976.6)	1,137(88.3)	1,197(5.2)	965(-15.3)
신변잡화	642(19.2)	797(24.2)	980(23.1)	1,053(7.4)	940(-0.6)
목재류	428(23.1)	511(19.4)	793(55.1)	657(-17.1)	569(-5.8)
컴퓨터	552(38.0)	560(1.4)	534(-4.6)	679(25.9)	1,111(79.5)
기구부품	268(30.7)	496(89.9)	445(-10.4)	512(15.1)	431(-7.5)
산업용 전기기기	287(28.8)	317(10.3)	416(31.1)	479(14.8)	521(18.9)
반도체	123(10.5)	374(203.7)	396(5.8)	471(19.1)	520(19.7)
영상기기	340(126.7)	400(17.7)	329(25.6)	356(-2.0)	371(11.2)
기타	4,066	5,279	6,197	6,330	5,846
합계	12,495(27.4)	16,176(29.5)	19,632(21.4)	21,071(7.3)	18,876(-3.5)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2018년 순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19~2020년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시 기	단위	국 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19년(연간)	%	0.7	5.9	4.3	5.02	7.02
		2020년 2Q	%	-5.8	-11.5	-2.7	-3.5	2.62
		2020년 4Q	%	-4.5	N/A	N/A	-1.1*~-0.2*	N/A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19년(연간)	-	N/A	N/A	114.6	148.7	9.1
		2020년 10월	-	105.7	-13.8	N/A	N/A	5.4
		2020년 11월	-	N/A	-11.9	N/A	N/A	9.2
	구매관리자지수 (PMI)	2019년(연간)	-	100	51.6	105.2	50.1	N/A
		2020년 10월	-	50.5	48.5	N/A	47.8	51.8
		2020년 11월	-	50.4	49.9	N/A	50.6	49.9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19년(연간)	-	N/A	N/A	86.2	124.3	N/A
		2020년 10월	-	99.7	N/A	N/A	79.0	N/A
		2020년 11월	-	N/A	N/A	N/A	92.0	N/A
	소매판매	2019년(연간)	-	N/A	N/A	139.5	228.2	11.8
		2020년 10월	-	85.7	1.2	N/A	183.5	6.1
		2020년 11월	-	N/A	N/A	N/A	182.7	8.5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19년(연간)	%	1.0	2.5	0.7	3.03	2.8
		2020년 10월	%	-0.2	2.5	N/A	1.4	2.5
		2020년 11월	%	N/A	3.3	N/A	1.6	1.5
투자	고정자산투자	2019년(연간)	%	2.3	N/A	1.4	4.45	N/A
		2020년 3Q	%	N/A	N/A	N/A	-6.5	N/A
		2019년(연간)	%	-4.2	5.1	3.3	4.69	1.98
고용	실업률	2020년 3Q	%	N/A	10.0	N/A	7.1	2.5
		2020년 4Q	%	N/A	8.7	N/A	N/A	N/A
		2019년(연간)	%	-2.1	1.5	-1.7	-7.3	8.1
무역	수출증가율	2020년 10월	%	-8.7	-2.2	N/A	-3.3	9.9
		2020년 11월	%	-8.0	N/A	N/A	-9.5	8.8
		2019년(연간)	%	N/A	-4.8	-3.5	-9.3	7
	수입증가율	2020년 10월	%	-9.3	-19.5	N/A	-26.9	10.1
		2020년 11월	%	-9.4	N/A	N/A	-17.5	13.4
		2019년(연간)	%	0.7	5.9	4.3	5.02	7.02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 전망치는 *표기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흐름





1화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3대 키워드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흐름을 주도하는 3가지는 ① WTO 중심의 다자체제의 약화와 메가 FTA의 확대, ②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③ 디지털 무역의 확산을 들 수 있습니다.

1. 다자체제의 약화와 메가 FTA의 확대 : WTO의 위기와 새로운 통상

WTO 출범 이후 ① 무역의 다양화 및 복잡화, ②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성장, ③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회의, ④ 민간 영역 확대 등의 이유로 WTO 다자무역체제는 점점 약화되어 온 반면,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커짐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WTO 회원국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FTA 체결을 통해 다자무역체제의 공백을 채우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에는 일본 등 11개국간 CPTPP(포괄적·점진적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발효되었고, 최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도 15개 회원국이 정식 서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메가 FTA를 통해서 WTO 중심의 다자간 협정을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디지털 무역의 확대 : 새로운 통상 규범의 필요성 증대

디지털 무역의 확대는 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국제무역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재화가 탄생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도 중요한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교역재로 생각하지 못했던 의료, 교육, 광고와 같은 서비스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로 국경 간에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기존에 없었던 비즈니스인 공유경제, 모바일 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이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무역의 확산을 수용하기 위한 국제 통상규범은 미비한 상황이라 규범 정립을 위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대표적인 쟁점으로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 디지털세 도입 등이 있습니다.

주요국 양자 및 메가 FTA 체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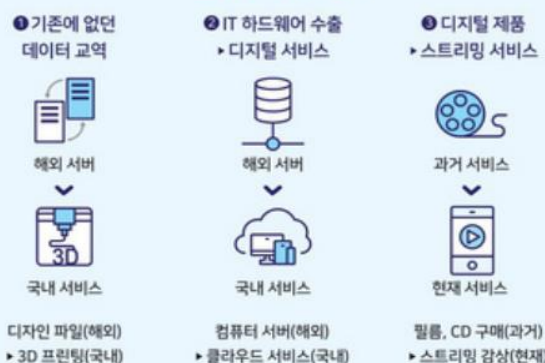
미EU 무역협상	
미일 무역협정	
일-EU EPA	
USMCA	
CPTPP(11)	
RCEP(16)	
ASEAN(10)	
한국과 양자 FTA 발효중인 국가	

2.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 총성없는 무역전쟁

미중간 헤게모니 갈등과 전 세계로 확산된 보호무역조치는 당분간 지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간 통상분쟁은 갈등이 장기 지속되면서 양국 및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전한 기간에 돌입하여 영-EU간 협상이 진행 중인 브렉시트(Brexit)도 현재까지도 노딜의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유럽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인도, 중국 등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의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조치는 그 수위와 강도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무역 패턴 예시





□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설명회('20.12.18) 자료

- 개최 동영상 링크 :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 관련 기사 : 아래글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KOTRA 해외시장뉴스 - 베트남 단기출장자 특별입국 절차](#)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84 24-3946-0511 joara@kotra.or.kr <저작권자 © KOTRA >